

2004년도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5권중 5권

2003. 12.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Republic of Korea



#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2004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4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 변경과정에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http://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
    - 연락처 : 전화 031-299-8822~5, 팩스 031-299-8800

# 차 례

## 제5권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b>I. 경영기반확충</b> .....	2113
54.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	2115
① 산림경영장비지원 ② 임업기계지원센터설치	
55. 영림계획(자율) .....	2124
56. 사유림협업경영(공공) .....	2129
57.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공공) .....	2133
① 임도시설 ② 사방사업	
<b>II. 생산 및 유통개선</b> .....	2143
58. 임산소득증대(자율) .....	2145
① 단기임산물생산 기반조성 ② 조정수·분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④ 산림종합자금제도	
59. 목재이용·가공 및 국산재활용 지원(자율) .....	2195
① 목재이용·가공지원 ② 국산재활용 지원	
60. 산림조합육성(공공) .....	2213
61.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	2217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② 목재유통지원	
③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b>III. 인력육성</b> .....	2261
62.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등 육성(자율) .....	2263
63.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업기술지도(공공) .....	2269
① 임업전문인력육성 ② 임업기술지도	
<b>IV. 산림 복지기능 증진</b> .....	2279
64. 산림휴양공간조성 및 산림박물관 등 조성(공공) .....	2281
① 산림휴양공간조성 ②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③ 생태숲 조성	
65. 산촌개발(공공) .....	2295

V. 산림자원 조성 .....	2303
66. 해외조림사업(자율) .....	2305
67. 산림자원 조성(공공) .....	2311
① 조림·육림·묘목생산 ② 보호수 정비 ③ 산지복제비축 지원	

## 제1권 관계규정 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	1
1. 배경 .....	3
2. 주요골자 .....	4
3. 주요 변경사항 .....	7
4. 해설 .....	9
제1장 총칙	
제2장 자율사업	
제3장 공공사업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제5장 보칙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	27
1. 배경 .....	29
2. 주요골자 .....	30
3. 주요 변경사항 .....	34
4. 해설 .....	38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145호) .....	57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143호) .....	109
V.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137
VI. 기타주요사항 .....	249
참고 1.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참고 2. 고품질쌀 관련 정의	

##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b>I. 생산기반확충</b> .....	258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	260
2. 토양개량사업(자율) .....	313
3. 주요농작물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	323
4. 밭기반정비(공공) .....	333
5. 농지기반조성(공공) .....	362
① 경지정리사업   ②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6. 배수개선(공공) .....	411
7. 수리시설개보수(공공) .....	435
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② 저수지 준설사업	
③ 방조제개보수   ④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8. 농촌용수개발(공공) .....	480
① 대·중·소규모 용수개발   ② 지표수 보강개발	
9. 농업생산기반정비(공공) .....	522
①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② 지하수 자원관리	
③ 농업용수관리자동화   ④ 해외농업환경조사	
⑤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10. 농지조성(공공) .....	569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11. 지역특화사업(공공) .....	603
<b>II. 농업기계화</b> .....	626
12. 농기계구입지원(자율) .....	628
13.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	689
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②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지원	
<b>III. 생산 및 유통개선</b> .....	714
14.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자율) .....	716

### 제3권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b>I. 생산기반 확충</b> .....	742
15.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자율) .....	744
① 고품질 우량종자개발 ② 마늘경쟁력 제고지원	
<b>II. 사육기반확충</b> .....	824
16. 사료사업 지원(자율) .....	826
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② 사료사업지원	
17.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자율) .....	862
18. 축산 계열화사업(공공) .....	889
① 가축계열화 ② 경주마육성	
19. 한우사업지원(공공) .....	911
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②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	
③ 품질고급화 장려금	
20. 가축개량사업(공공) .....	944
<b>III. 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b> .....	996
21. 농산물 표준 규격화사업(자율) .....	998
① 농산물물류표준화 ②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③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	
22.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율) .....	1069
①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 ②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 지원	
③ 인삼계열화사업	
23.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자율) .....	1107
24.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자금지원(자율) .....	1149
25. 농산물도매시장건설 및 유통시설지원(공공) .....	1161
① 농산물유통시설보완 ② 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26. 농수산물 소비지 유통기반확충(공공) .....	1184
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건설 ② 농산물직거래 시설지원(직거래매취)	
③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 시설지원	
27.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공공) .....	1212
① 농산물 자조금 조성 ② 축산 자조금 조성	
28. 채소 수급안정 사업(공공) .....	1225
①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 ② 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	

29.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	1239
30. 농산물 수출진흥사업(공공) .....	1243
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②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	
31. 우수농산물 지원(공공) .....	1282
①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②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운영	
<b>IV.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b> .....	1296
32. 축산물 유통개선사업(공공) .....	1298
①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설치 지원 ② 축산물가공시설운영자금 지원	
③ 축산물 판매시설 현대화 ④ 축산물등급판정 ⑤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	
33. 축산물안전성 검사 및 경영안정(공공) .....	1379
① 가축질병 근절대책 ② 축산물검사	
③ 가축방역 ④ 가축공제	
34. 학교 우유급식사업(공공) .....	1420
35. 축산업등록지원사업(공공) .....	1428

## 제4권 농촌개발

<b>I. 생산 및 유통 개선</b> .....	1435
36. 친환경농업육성(자율) .....	1437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 ②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37.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 .....	1483
<b>II. 기술개발 및 정보화</b> .....	1497
38.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자율) .....	1499
①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②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원 ③ 농촌 PC보내기 지원	
④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운영 ⑤ 출하지원시스템 확충	
⑥ 마을단위정보이용시설 설치지원 ⑦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선정·활용	
39. 농림기술개발(공공) .....	1598



40. 농촌활력화*(공공) .....	1607
①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② 지역특화시범	
41. 기술보급*(공공) .....	1621
① 새기술보급시범 ② 품목별전문교육	
③ 4-H회원시범영농 ④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	
<b>III. 인력육성</b> .....	1653
42. 후계농업인육성(자율) .....	1655
① 창업농지원사업 ②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43. 농업인 자녀 지원(공공) .....	1714
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②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③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지원 ④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44.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	1744
<b>IV. 소득보전</b> .....	1779
45. 농업 직접지불제(공공) .....	1781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 ②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③ 논농업직접지불제 ④ 쌀생산조정제	
46. 농작물 재해보험사업(공공) .....	1893
47. 농가도우미지원(공공) .....	1902
<b>V. 소득원개발</b> .....	1913
48.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	1915
①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②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	
③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49. 한계농지정비사업(자율) .....	1973
50. 농가경영안정지원(자율) .....	1986
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②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51. 농공단지육성(공공) .....	2003

VI. 생활환경개선 .....	2021
52.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공공) .....	2023
① 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가주거환경개선*	
53.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	2085

# I. 경영기반확충

여 백

## ① 산림경영장비 지원

## 1. 목 적

독립가, 임업후계자 및 산림경영자들에게 임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임업기계 생산업체에게는 임업기계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임업기계화 촉진 및 산주소득증대 도모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우리 여건에 맞는 임업기계·장비의 지속적 개발 및 보급
- 인력의존에서 기계화로 전환하여 생산효율 증대

##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2007년	
사업량	210명 (314대)	2명, 6개업체 (18대)	14명, 2개업체 (16)	14명, 2개업체 (16)	40명 (40대)	
사 업 비	계	10,319	1,143	714	714	2,142
	보조	-	-	-	-	-
	융자	7,067	800	500	500	1,500
	지방비	-	-	-	-	-
	자부담	3,252	343	214	214	642

## 5. 2004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 배 경

- 농산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대표적인 3D업종으로 산림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 산림작업의 기계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산림경영자 및 임업기계생산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임업기계의 보급 및 연구개발 등에 한계가 있음.

##### ○ 지원대상자

- 구입자금 : 독립가, 임업후계자, 산림경영자 등 임업을 영위하는 자
- 생산자금 : 한국임업기계화협회에 등록된 임업기계 생산업체

##### ○ 지원규모 및 조건

- 재 원 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비율 : 장비구입비의 70%(자부담 30%)
- 지원내용 : 산림경영장비 구입비 및 임업기계 생산자금
- 지원단가 : 구입자금 - 사업자당 50백만원이내  
생산자금 - 업체당 100백만원이내

#### 나. 2004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6	714	500	-	500	-	214
임업 기계화	16	714	500	-	500	-	214

※ 융자조건 : 연리 4%, 3년 거치후 7년 상환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

- 대상자 선정
  - 구입자금 : 산림조합
  - 생산자금 : 한국임업기계화협회
- 용자지원 : 시·군 산림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국유림관리국 국유림경영과(042-481-4206)
- 산림조합중앙회 : 금융부(02-3434-7221)
- 시·군 산림조합 : 사업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 2004년 산림경영장비 지원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된 자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임업기계 구입비 및 생산자금(한국임업기계화협회 경유)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가 구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작성하여 산림조합에 제출
  - 생산자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장에게 변경 승인 요청
  - 사업주관기관인 산림조합에서는 지원대상자 확정
- 사업비 집행방법
  - 지원대상자를 확정된 산림조합은 신청자에게 대출 신청토록 통보
  - 산림조합장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여신관련규정에 의거 지원
- 추진일정
  - 자금 신청 : 1월 ~ 12월
  - 자금 대출 : 1월 ~ 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은 용자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용자금의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용자금 회수
- 용자를 받은 자는 용자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물자 등을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관할 산림조합장
- 사후관리절차
  - 관할 산림조합장 책임하에 사업계획서에 의한 장비구입 활용여부 및 생산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점검
  -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 여부 점검

## 6. 2005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관할 산림조합

### 나. 신청자격(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 구입자금 : 독립가, 임업후계자, 산림경영자 등 임업을 영위하는 자
- 생산자금 : 임업기계 생산업체

#### (2) 우선순위

##### <구입자금>

- ① 독립가
- ② 임업후계자
- ③ 산림경영자
- ④ 일반 소재산주

##### <생산자금>

- ① 한국임업기계화협회에 등록된 임업기계 생산업체
- ② 일반 임업기계 생산업체

### 다. 신청절차

- 선정권자 : 산림조합
- 선정절차 : 산주(생산업체) 신청→심사(산림조합, 한국임업기계화협회) → 산림조합에서 대상자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
- 선정권자는 신청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 수행능력, 자부담능력, 영림계획,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마. 기타사항 (유의사항)

- 산림경영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용자
-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과 산림사업 용자지원의 연계추진
- 채권보전 : 용자취급기관 여신관계 규정에 의함.

## ②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 1. 목 적

영세한 산주에게 고가의 임업기계장비를 싼가적으로 대여, 기술지도 등을 해줌으로써 산주의 경제적 부담경감 도모 및 임업기계화 촉진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인력의존에서 기계화로 전환하여 생산효율 증대
- 고가의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대여 및 기술보급 전초기지로 육성

###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2007년
사업량		1개소	1개소	2개소	1개소	5개소
사 업 비	계	435	533	1,106	653	1,959
	보 조	435	533	1,106	653	1,959
	용 자					
	지방비					
	자부담					

## 5. 2004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 배경

- 일시적 사용을 위해 가격이 비싼 임업기계를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세한 산주 등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임업기계장비를 대여·기술지도해 줄 수 있도록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산주의 경제부담 경감 및 임업기계화를 촉진

##### ○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중앙회

##### ○ 지원규모 및 조건

- 재 원 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비율 : 보조 100%
-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

#### 나. 2004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1개소	653	653	653	-	-	-
기계지원 센터	1개소	653	653	653	-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대상자 : 평창산림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국유림관리국 국유림경영과(042-481-4206)
- 산림조합중앙회 : 개발부(02-3434-7175)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산림조합중앙회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산림조합중앙회는 세부 사업계획(부지위치, 면적, 구입기계·장비 등)과 시설공사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림청에 변경 승인후 추진
- 사업비 집행방법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산림조합중앙회는 보조금을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회수 조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비치
-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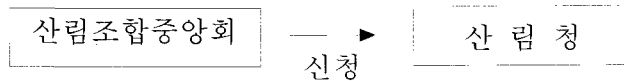
- 사후관리책임자 : 산림조합중앙회장
- 사후관리절차
  - 산림조합중앙회장 책임하에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장비구입 활용 여부 및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점검

## 6. 2005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004. 3. 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나. 신청서 제출기관 및 신청자격 : 산림조합중앙회

다. 신청절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지원과(과장 이경일, 임업사무관 이상익)입니다.

## 1. 목 적

-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등에 대한 장기간의 종합계획인 영림계획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임업경쟁력 강화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림소유자의 자율적 영림계획작성·운영을 통한 합리적 산림경영 유도
- 산림경영의 의지가 있는 자 또는 경영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집중지원 함으로써 임업경영의 경쟁력 강화 및 산림사업의 추진 체계화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5조(권한의 위임·위탁)
- 산림법 제8조(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의 작성 등)
- 산림법 제10조(임업기술지도 등)
- 산림법 제109조(자금지원)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년이후	
사 업 량 (천ha)	2,442	100	100	100	300	
사 업 비	계	13,564	810	810	810	2,430
	보 조	5,975	405	405	405	1,215
	용 자	-	-	-	-	-
	지방비	4,921	405	405	405	1,215
	자부담	2,668	-	-	-	-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영림계획작성기간 : 10년 계획기간으로 영림계획작성
- 영림계획작성내용
  -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육림에 관한 사항
  -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벌기령) 등에 관한 사항
  -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영림상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자 :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자
- 지원단가 : 8,102원/ha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자
  - 기준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00천ha	810	405	405	-	405	-
영림계획작성	100천ha	810	405	405	-	405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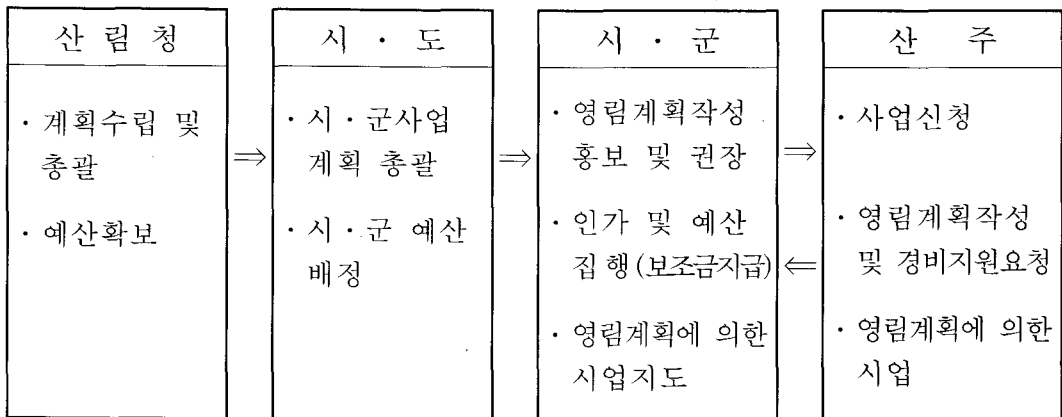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 (042-481-4191~2)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자치구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2004년도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은 자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영림계획작성 대상산림현황 파악 및 예산확보
  - 영림계획작성 홍보 및 권장
  -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신청시 작성경비 보조 안내
  - 영림계획인가와 동시에 보조금 지급
- 사업비집행방법



- 영림계획작성
  - 영림기술자
  - 독립가·임업후계자는 자기 소유산림에 한하여 작성가능



- 추진일정
  - 작성경비지급 : 1월 - 12월
  - 영림계획작성 : 1월 - 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치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정산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영림계획인가 전에 현지확인을 통하여 현지여건에 부합되게 영림계획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 영림계획인가와 동시에 8,102원/ha(국고 50%, 지방비 50%) 작성경비 지원
- 영림계획인가 지역에서는 영림계획대로 산림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
- 영림계획대로 시업하는 자에게는 국고보조 사업일 경우 우선지원
- 영림계획대로 시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림계획 인가 취소

나. 보고·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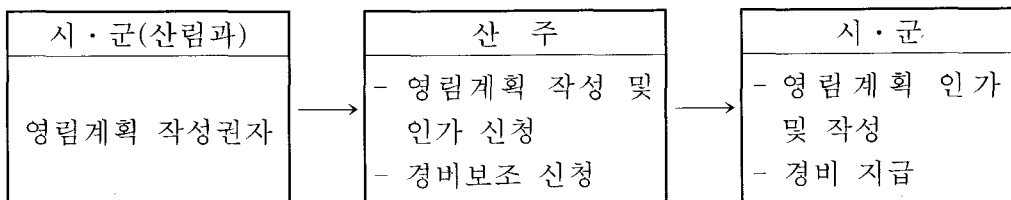
- 영림계획작성현황 및 실행상황 보고(총49-31)
- 국고보조금정산보고서(총공통-9)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2005년도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① 독립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체 가입산림, 대리경영산림
  - ② 경제림육성단지(시·군 지자체에서 지정한 경우), 임업진흥촉진지역
  - ③ 생산임지
  - ④ 기타 산림
- ※ 규모화 집단화된 임지에 최우선 배정

○ 선정절차

- 영림계획 미작성 산림 및 작성년도 도래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 영림계획 작성 권장(시·군)
- 영림계획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림소유자)
- 보조금 교부(시·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립지원과(과장 이경일, 행정사무관 김영철)입니다.

## 1. 목 적

- 영세 사유립을 대상으로 협업체의 조직·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소득을 증대시켜 사유립경영의 활성화 도모

## 2. 시책 및 추진방향

- 협업체의 양적인 확대를 지양하고 기존 협업체의 경영 내실화 추진
- 협업체를 사유립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임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7조(경영구조개선)  
동법시행령 제4조(협업경영)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년 이후
사업 량	조 직 (운 영)	247개	(247개)	(247개)	(247개)	(247개)
	공동소득지원	345	29	19	-	-
사 업 비	계	24,725	2,151	2,151	300	1,500
	보 조	14,032	1,333	1,333	300	1,500
	용 자	-	-	-	-	-
	지방비	2,068	269	269	-	-
	자부담	8,625	549	549	-	-

※ ( ) 내는 협업체 조직 누계임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 배경

사유림 총면적은 4,473천ha 산주수는 약 2,169천명으로 산주1인당 평균 소유면적은 2.1ha에 불과하고 10ha미만 산주가 96%를 차지하여 개별 산주의 독자적인 산림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협업경영을 통하여 임지를 규모화함으로써 소규모 임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관리를 유도

##### ○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지원조건

구 분	지원대상자	지 원 단 가	지원조건
○협업체운영비	우수협업체	1개협업체×4,000천원=4,000천원 ※50개협업체×4,000천원=200백만원	국고 100%
○기자재 및 장비	우수협업체	1개협업체×5종×1,000천원=5,000천원 ※20개협업체×5종×1,000천원=100백만원	국고 100%

####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300	300	300			
- 일반회계		300	300	300			
· 협업체운영비	50개소	200	200	200			
· 기자재·장비	20개소	100	100	1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

####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릫 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 (042-481-4211~3)
- 산 릫 조 합 :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 산림조합

####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운영비 : 협업경영사업이 우수한 협업체
- 기자재·장비 : 협업경영사업이 우수한 협업체

####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사업시행계획작성 : 산림조합 및 협업체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산림조합장이 산림조합중앙회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변경승인권자 : 산림청장(운영비, 기자재·장비)
- 사업비 집행 : 산림조합중앙회를 경유하여 산림조합에서 집행
- 추진일정
  - 보조금 신청 : 1월~12월
  - 보조금 교부결정 : 1월~12월

####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치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정산

#### 바. 기타사항

- 중앙회는 자금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산림조합장은 협업경영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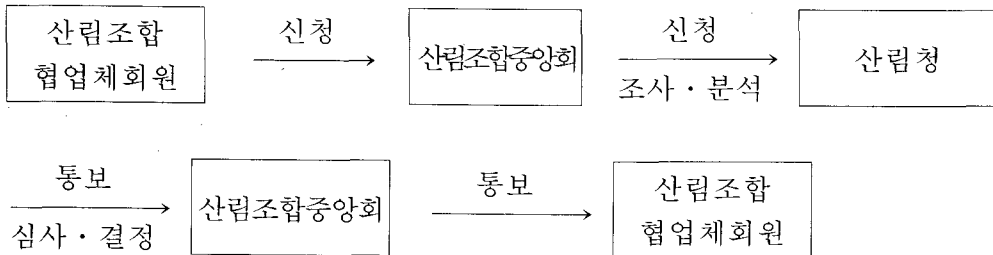
- 농특회계 : 산림조합

### 나. 신청자격

- 협업체가 조직된 산림조합

### 다. 신청절차

- 농특회계



###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4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1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모범적인 협업체 운영지역

- 우선순위

- 협업체회원의 참여도가 좋고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협업체

- 선정절차

- 산림조합장의 신청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협업체운영비, 기자재장비 계획서를 조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

## ① 임도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지관리과(과장 이창재, 임업사무관 제경영)입니다.

## 1. 목 적

-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설치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 기존 임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철저

##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가. 국고보조임도

- 신 설
  - “환경친화적 녹색임도정책” 구현을 위하여 품질 우선의 임도를 설치
  - 조림·육림·벌채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 대상지에 우선 설치
  - 기존임도와 연계하여 간선임도 위주로 설치
- 구조개량·보수
  -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은 구조개량사업 5개년계획에 의거 가옥·농경지·주요시설 등 재산피해 및 경관저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

## 나. 용자임도

-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임도시설 및 보수비 지원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임도의 설치 등)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정지원)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92-'01년	'02년	'03년	2004년 (예산안)	2005 계획
○ 사업량						
	- 신설	10,143	744	760	322	322
	- 구조개량	200	446	500	715	715
	- 보수 등	3,736	532	532	531	531
사	계	641,028	66,997	74,003	71,311	73,448
업	보 조	293,129	31,947	34,896	55,836	57,509
	용 자	54,770	3,103	4,211	1,516	1,562
	지방비	234,477	25,558	27,917	6,980	7,189
비	자부담	58,652	6,389	6,979	6,979	7,188

#### 5. 2004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 개 요

- 조림·육림·벌채·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임업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오지교통개선 및 농산촌지역개발을 위하여 산림안에 임도(산길)를 설치
-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확대로 재해방지 및 활용도 제고

##### ○ 지원대상

##### - 국고보조임도

- 신 설 : 당해연도 간선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임도예정노선으로서 임도  
시설계획이 확정된 임도
- 구조개량·보수 : 가옥·농경지·주요시설 등 피해우려지역과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

- 용 자 임 도 :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로서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 지원규모

- 국고보조임도 : 피해방지·경관유지 가능하도록 현실사업비 지원
- 용 자 임 도 : 설계금액범위내에서 1인당 2억원이내



○ 지원조건

- 국고보조임도 : 국고 80%, 지방비 10%, 자부담 10%
- 용 자 임 도 : 국고용자 100%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km,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보조:농특, 용자: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71,311	57,352	55,836	1,516	6,980	6,979
○ 신 설	322	39,516	31,916	30,400	1,516	3,800	3,800
- 보 조	304	38,000	30,400	30,400	-	3,800	3,800
- 용 자	18	1,516	1,516	-	1,516	-	-
○ 구조개량	715	29,315	23,452	23,452	-	2,932	2,931
○ 보수 등	531	2,480	1,984	1,984	-	248	248

※ 용자조건 : 연리 3%, 기간 20년(10년거치 10년 상환)

<추진체계>

가. 국고보조임도

1)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2) 사업담당부서

- 산 립 청 : 임업정책국 산지관리과 (042-481-4181-2)
- 시 · 도 : 산림과(녹지과)
- 시·군·구 : 산림과(녹지과)

3) 예정지선정

○ 신 설

- 선정기준

- 조림·육림·간벌·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
- 산불예방·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
-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 농산촌 마을의 연결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 선정방법

- 간선임도설치계획이 수립된 임도중 산림법 제10조의5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된 노선

○ 구조개량·보수

- 구조개량사업계획에 의한 피해우려지역과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

4) 사업시행

- 신설임도의 경우 사업시행 전년도에 임도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 (단, 간선임도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실시할 수 있음)
- 실시설계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년도에 완료

5) 실행체계

- 산림청 : 국고 소요예산 확보 및 시·도에 사업계획 수립·시달
- 시·도
  - 익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임도의 타당성평가 실시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신청
  - 자체 사업계획수립 시·군에 사업지시
- 시·군·구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신청
  - 산주자부담금 확보 및 사업설계·발주, 실행지도·감독

나. 용자임도

1) 사업주관기관 : 시·군 산림조합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산지관리과 (042-481-4181-2)
- 산림조합중앙회 : 금융부(02-416-9421-2)
- 시·군 : 산림조합

3)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로서 임도를 자부담(용자)으로 시설하고자 하는 자
  - 용자취급기관(산림조합)의 여신관계 채규정에서 정한 채권보전이 가능한 자

- 우선순위
  - 시·군산림조합의 용자신청 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절차
  - 산림조합에 접수된 용자신청서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후 선정

#### 4) 사업시행

- 사업공정계획
  - 1~3월 : 용자대상자 및 대상지 선정
  - 3~12월 : 임도노선선정 및 실시 설계, 공사실행·준공
    - ※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시공
- 사업계획 변경
  - 임도공사 변경요인 발생시 시·군산림조합과 협의한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실행
- 사업비 지원 및 실행
  - 산림청 : 용자지침시달 및 예산확보후 사업계획의 종합 시달
  - 산림조합중앙회 : 사업계획을 도별로 조정
  - 시·군산림조합 : 용자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행
    - ※ 용자임도시설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또는 영림계획사업 등에 대한 행정처리는 시·군·구에서 조치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국고보조로 시설한 임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지·관리
- 용자를 받아 시설한 임도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가 유지·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단, 산주의 동의를 얻어 임도시설대장에 등재한 경우에는 국고보조임도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지·관리할 수 있음).
-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에게 용자한 용자금은 해당 산림조합에서 관리.

#### 나. 보고·기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

## ② 사 방 사 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지관리과(과장 이창재, 임업사무관 김종선)입니다.

### 1. 목 적

황폐지(산지·해안·계천)를 복구 녹화하여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재해 예방과 수원함양·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완결원칙에 의한 계통사방 실시(산정 → 산복 → 댐 → 약계)
- 적지적공법에 의한 합리적 설계와 견실한 시공
- 산사태 등 재해예방에 역점을 두어 시공

### 3. 근거법령

- 사방사업법 제5조
  - 사방사업은 특정개인에게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국가에서 선정 실행
- 사방사업법 제26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	2003	2004년 (예산안)	2005년이후
사 업 량	산 지 사 방(ha)	1,838	60	64	88	805
	예 방 사 방(ha)	309	16	37	25	371
	약 계 사 방(km)	912	69	90	60	2,793
	사 방 댐(개소)	717	110	200	130	1,691
	사방댐준설(개소)	64	28	500	350	57
	해 안 사 방(ha)	61	-	-	-	42
	해안침식지복구(km)	15	6	7	5	55
	수질정화시설(개소)	12	-	-	-	201
	마을환경사방(마을)	6	-	-	-	197
사 업 비	계	220,205	31,619	56,264	64,674	670,090
	보 조	155,716	22,863	41,053	48,215	475,525
	지 방 비	64,489	8,756	15,211	16,459	194,565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사업의 종류

###### ○ 산지사방

- 자연황폐지·산사태발생지 등에 토사유출 또는 사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고, 지피식생 조성을 위해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임.

###### ○ 예방사방

- 주택가·산업시설주변 등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임.

###### ○ 야계사방

- 산간·마을주변 황폐계곡의 산기슭 침식을 방지하고 물의 흐름을 완화시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류를 정비하는 공사임.

###### ○ 사 방 댐

- 황폐계천의 토사·자갈이 하류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계곡에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횡공작물을 설치하는 공사임.

###### ○ 사방댐 준설

- 기설치한 사방댐중 토사가 가득찬 곳을 대상으로 준설하는 공사임.

###### ○ 해안침식지 복구

- 해안의 모래언덕 또는 해안산림이 파도에 침식되어 유실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파도막이 및 침식방지 시설을 하는 공사임.

##### (2)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국유림은 국고 100%)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64,674	48,215	48,215	-	16,459	-
산 지 사 방	88ha	4,752	3,650	3,650	-	1,102	-
예 방 사 방	25ha	2,026	1,418	1,418	-	608	-
야 계 사 방	60km	11,460	8,022	8,022	-	3,438	-
사 방 댐	130개소	32,500	25,000	25,000	-	7,500	-
사방댐준설	350개소	2,450	1,767	1,767	-	683	-
해안침식지	5km	1,591	1,114	1,114	-	477	-
다목적산림댐	1개소	864	584	584	-	280	-
산림유역관리등	2개소	9,031	6,660	6,660	-	2,371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산지관리과(042-481-4185)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산림환경연구소 : 산림토목 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1) 선정기준

- 각 사업종류별 적정대상지로서 토사유출·산사태·침식·붕괴 등으로 인한 방지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또는 국토·경관보전에 저해가 되는 곳에 시공
- 개인 또는 공공단체에서도 자기소유 토지안에서 자기부담으로 사방사업을 실행할 수 있음.

(2) 우선순위

- ① 인명·가옥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곳
- ② 공공시설·산업시설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곳
- ③ 농경지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곳

(3) 선정절차

- 도 산림환경연구소(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산림환경과)에서 사방사업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실행함.
- 지역주민이 각급행정기관을 통하여 사방사업 실행을 건의하면 타당성을 검토·실행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1)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사업시행계획
  - 11~12월중순 : 익년도 사업예정지 선정
  - 1~2월 : 사업실행설계서 작성
  - 3~6월 : 준기사업 실행
  - 9~12월 : 추기사업 실행
- 선정된 사업대상지 또는 사업실행중 설계내용이 불합리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변경 실행

(2) 재해방지 및 국토보전을 위하여 장기간의 시공경력과 전문인력·기술·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우선 시공

(3) 다만, 저수용 사방댐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댐 설계·시공경력이 있는 업체에서 시행원칙

- ※ 저수용 사방댐은 구매가 급한 계류에 설치할 경우 댐 자체의 전도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을 위하여 콘크리트댐으로 시공

(4) 사업비 집행방법(사업실행 체계)

-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량을 검토하여 기획예산처에 예산신청, 국고소요 예산 확보 및 시·도에 사업계획 전달

- 시·도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신청
  - 산림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량에 대한 지방비 확보 및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 지시
- 도 산림환경연구소(특·광역시녹지과, 제주도 산림환경과)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신청
  - 사업실행 예정지선정 및 사업설계·실행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방사업을 실행한 주체(도 산림환경연구소 등)가 사후관리함이 원칙
  - 필요할 경우 산주 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되, 이 경우 사후관리비는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부담

### 나. 보고·기타

- 사업설계 및 실행상황(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총공통-9)



## Ⅱ. 생산 및 유통개선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지원과 (과장 이정일, 행정사무관 윤병현)입니다.

###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1.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밤·표고·송이 등)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수출경쟁력 확보
- 생산기반 시설을 현대화·규모화하여 전업농으로의 육성 및 생산성·품질 향상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농산촌주민 소득증대 도모

#### 2. 시책 및 추진방향

- 밤·표고·송이 등 임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배시설 현대화·규모화, 기계화 기반시설 지원 확대
- 산나물, 산약초 등 단기고소득품목의 개발 및 지원 확대
- 집약적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확대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자금지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 4. 연도별 지원계획

가. 식용산림자원 생산기반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	2003	2004 (예산안)	2005~2006년	
사 업 량	-	-	-	-	-	
사 업 비	계	279,674	51,267	55,381	34,041	68,842
	보 조	39,933	6,219	7,882	8,312	16,624
	용 자	115,179	23,339	23,718	(19,360)	(37,960)
	지방비	32,955	5,269	6,017	7,338	14,676
	자부담	91,607	16,440	17,764	18,391	37,542

※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2003년도 사업비 내용 참조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되며, ( )내 용자금은 산림종합자금으로 별도 계상

나.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2006년
사 업 량		4단지	5단지	5단지	6단지	12단지
사 업 비	계	10,000	12,500	12,500	15,000	30,000
	보 조 용 자	4,000	5,000	5,000	6,000	12,000
	지방비	-	-	-	-	-
	자부담	2,000	2,500	2,500	3,000	6,000
		4,000	5,000	5,000	6,000	12,000

※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2003년도 사업비 내용 참조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단기임산물생산기반 지원

##### (가) 표고생산기반 지원

1) 표고생산자금 : 산림종합자금제도로 변경

2) 표고생산기반 지원

##### ○ 사업내용

① 표고재배 시설비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등 지원

② 표고재배단지 사업 : 표고재배의 규모화를 위한 재배단지 시설·장비 지원

③ 표고튕밥재배시설비 : 표고튕밥재배에 필요한 재배사, 배지시설비 등을 지원

※ 표고자목 및 배지구입비는 용자사업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 : 표고(원목,튕밥)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재배단지는 법인  
경영체에 한함)

#####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용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표고재배단지 사업의 경우 선별·포장기 및 표고자목구입비는 국고  
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국고보조한도액 : 50백만원이내(법인경영체는 500백만원 이내)
  - ※ 표고톱밥시설(배지생산) : 200백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불기피할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가능
- 지원단가

① 표고재배 시설비

- 비닐하우스 시설 : m<sup>2</sup>당 8,800원(국고보조 4,400원, 국고용자 4,400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기계·장비 :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 배지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② 표고톱밥시설(배지생산)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③ 표고재배(원목, 톱밥)단지 사업(1개단지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	자부담
계	1단지	1,100,000	205,200	257,000	205,200	432,600
○ 재배시설	1단지	726,000	145,200	145,200	145,200	290,400
○ 저장시설	1개소	300,000	60,000	60,000	60,000	120,000
○ 선별·포장기	1조	74,000	-	51,800	-	22,200

※ 지역실정 및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재배시설과 저장시설은 표고재배 시설비 사업」으로 「선별·포장기 사업은 표고생산자금지원 사업」으로 분할·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실정 및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단지당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또한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표고재배단지사업으로 표고재배사 지원 가능(단, 이 경우 저장, 선별·포장기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표고종균생산시설

- 사업내용 : 표고종균 시험·연구·생산을 위한 시설·장비·자재 지원
-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미생물사업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 국고보조한도액·단가 : 600백만원 이내

## (나) 밤생산기반 지원

### 1) 밤나무 작업로·방제장비 지원

- 사업내용
  - 밤작업로 시설 :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 밤작업로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가능함. 단,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내 가능.
  - 방제장비 지원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제외)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밤작업로 시설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방제장비 지원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50%, 지방비 20%, 자부담 10%
  - ※ 방제장비 탑재용차량은 융자사업으로 지원
- 지원조건
  - 밤작업로 시설 : 연리 4.0%, 5년거치 5년상환
  - 방제장비 지원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지원단가
  - 밤작업로 시설 : km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 예시) 경사도 10°미만 2백만원, 10~20°미만 3백만원, 20°이상 4백만원
  - 방제장비 지원 : 대당 12,000천원 이내

### 2)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지원

- 사업내용 : 산성화된 밤나무 임지에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등)를 사용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ha당) : ha당 총사업비 282천원(임지의 산도, 토양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실행)
- 석회공급계획 수립 및 살포요령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 52450-1124 (2002.12.30)호를 참조

### 3) 밤나무 노령목 관리

- 사업내용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정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실행)

※ 구체적인 작업요령 및 ha당 단비는 지원52430-1124(2002.12.30)호를 참조

### 4) 밤나무 묘목대 지원

- 사업내용 : 노령목 갱신을 위한 묘목대 지원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573천원

### 5) 밤나무 토양개량용 퇴비발효기

- 사업내용 : 밤나무재배지 산성토양 개량을 위하여 퇴비생산을 위한 퇴비발효기 공급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지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총사업비 : 190백만원/대당

### (다) 대추·호도생산기반 지원

- 사업내용
  - 생산기반 지원 : 대추·호도생산 기반조성으로 생산경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묘목대,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등 지원
- 지원대상자 : 대추·호도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용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국고지원한도액
  - 생산기반 지원 : 개별농가의 경우 16백만원(국고보조 8백만원, 국고용자 8백만원), 법인경영체의 경우 80백만원(국고보조 40백만원, 국고용자 40백만원)이내

(라) 야생화·산채류 등 단기임산물 생산지원 및 임산물 생산장비지원  
: 산림 종합자금제도로 변경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사업내용 : 송이산가꾸기(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생산 유리온실 등 시설, 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 재배단지 작업로 시설 등, 산과실(산머루 등)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묘목대, 지주대, 자재비 등 기반시설비, 오갈피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묘목대, 자재비 등

※ 단 '05년부터 묘목대는 총사업비에 포함하되 자부담으로 사업추진

- 지원대상자 :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지원단가(총사업비)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함.
  -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생산 유리온실 시설 : 평당 800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1,000천원, 하우스 시설은 250천원 이내
  - 송이산가꾸기 : 3,295천원/ha
    -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실행 가능함
  - 산과실(산머루 등)·산약초·산채류·오갈피 : 평당66천원이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 작업로시설 : km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 예시) 경사도 10°미만 2백만원, 10-20°미만 3백만원, 20°이상 4백만원ha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1)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 자		
계		34,041	8,312	8,312	(19,360)	7,338	18,391
○ 표고 생산기반 지원		23,756	5,381	5,381	(14,396)	4,781	13,594
- 표고생산기반조성		19,124	4,781	4,781	(4,988)	4,781	9,562
- 표고생산자금		4,032	(9,408)	-	(9,408)	-	4,032
- 표고종균생산시설		600	600	600	-	-	-
○ 밤 생산기반 지원		7,775	2,611	2,611	(1,775)	2,237	2,927
- 밤작업로 시설	1,300km	3,120	780	780	(780)	1,170	1,170
- 방제장비	50대	300	120	120	(615)	120	60
- 밤나무 토양개량	4,518ha	1,274	1,019	1,019	-	255	-
- 밤나무 노령목관리	1,500ha	1,938	388	388	-	388	1,162
- 묘목대 지원	1,000ha	573	114	114	-	114	345
- 토양개량용 퇴비발효기	5개소	570	190	190	(380)	190	190
○ 대추·호도 생산기반 지원	40개소	1,280	320	320	(320)	320	640
○ 야생화·산채류 등 단기임산물 생산지원	-	1,230	-	-	(2,869)	-	1,230
○ 생산장비지원	-	-	-	-	-	-	-

※ ( )내 용자금은 산림종합자금으로 별도 계상

※ 위사업비 중(임산물생산단지포함) 20%범위내에서 지원비율·사업단비를 준수하여 사업간 변경지원 가능하고 그결과를 산림청에 통보하며, 20%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과 협의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 자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6개소	15,000	6,000	6,000	-	3,000	6,000

(3) 임업경영컨설팅

- 사업내용 : 임업경영체 및 임가들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사업의 조기정착이 지연되고 성공가능한 임가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 임업인의 경영혁신 노력을 측면지원하기 위해 경영전반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 지원대상자
  - 임업분야 법인경영체 및 개별임가
  - 국산 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임산물 가공업체
-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컨설팅비용 지원 : 경영체당 평균 8.5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사업비한도액 : 임업법인·가공업체 : 5~20백만원, 개별농가 : 3~10백만원
    - ※ 계약금액이 사업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
  - 계약기간 :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지원내역
  - 지원대상에 대해 사업비 한도 내에서 컨설팅료의 50%지원
    - 지원한도 : 농업법인·가공업체 : 2.5~10백만원, 개별농가 : 1.5~5백만원
  - 지원자금은 농업경영 컨설팅료의 지급 이외에 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2004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 자		
○ 임업경영컨설팅	20임가	170	51	51	-	-	119

- 2004년도 사업계획
  - 2004년도 신규사업임을 감안, 주요 임산물 주산단지 시·도에서 시범적 추진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산림조합  
 ※ 다만, 표고중균생산시설사업은 산조중앙회가 사업주관 기관임.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042-481-4195~6, 4214~15)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산유통부(02-3434-7184)
- ※ 국고보조가 있는 용자사업은 현행대로 시·군·구가 담당부서이고  
순수 용자사업의 경우는 산림조합이 담당부서가 됨.

#### 다. 자금지원 예정자

-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미생물사업소
- ※ 자금지원예정자가 다수인인 사업은 기재 생략함.

#### 라. 사업시행

☞ 국고보조가 있는 용자사업은 현행대로 해당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고 순수용자 사업의 경우는 산림조합이 사업시행 주체가 됨.

#####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에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 ※ 표고종균 생산시설 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 ※ ①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림청장
  - ② 밤작업로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장비임차, 투입계획 등에 의한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보조금이 포함된 용자금의 경우 시장·군수가 해당 산림조합장에게 용자계획을 통보하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대출 조치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 ※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림청장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보조금 교부, 집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산림조합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시·군)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1회 이상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 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융자금 사후관리(산림조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표고·대추·호도 재배시설	2004년도	2008년도	5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준용
대추검사장비	〃	〃	〃	
밤방제장비	〃	〃	〃	
밤토양개량용 퇴비발효기	〃	〃	〃	
저 장 · 건 조 시 설	〃	〃	〃	
유 통 시 설	〃	〃	〃	
표고종균생산시설	〃	〃	〃	

##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표고종균생산시설의 경우 산림청장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총공통-9)
  - 표고종균생산시설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에 제출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용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31일 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 49-1)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읍·면·동)

※ 표고생산자금지원 등 순수 용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조합

### 나. 신청자격

#### (1) 단기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가) 표고생산기반 지원

##### 1) 표고생산기반조성

- 표고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표고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로서 사업신청 당시 법인설립후 2년이 경과된 생산자 조직

##### 2)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조중앙회 임산미생물사업소

##### (나) 밤생산기반 지원

##### 1) 밤작업로시설

-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자로서 밤 생산·관리의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시설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자
- 지방도, 농로, 임도 등 기존도로를 기점으로 작업로 시설이 가능한 밤나무 집단재배지

##### 2) 밤방제장비·밤나무토양개량·밤나무 묘목대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3) 밤퇴비발효기 지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다) 대추·호도생산기반 지원 : 대추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2)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관상산림식물생산 유리온실 시설 : 1개단지 규모가 온실 500평 이상(부대시설 별도)으로서 참여인원이 3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산머루시설재배 : 1개단지 규모가 1만평 이상으로서 참여인원이 5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산약초·산채 등 재배시설 : 1개단지 규모가 1만평 이상으로서 참여인원이 5인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오갈피 재배산지 : 1개단지 규모가 1만평 이상으로서 참여인원이 5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3) 임업경영컨설팅 지원

- 단기소득, 산림복합경 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 임산물 유통업체 및 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임산물가공업체

(4)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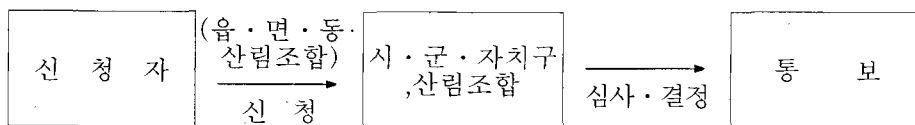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5)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표고생산자금 등 순수 용자사업은 산림조합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선정기준(공통사항)>

- 사업신청자중 다음 각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되, 최근 3년간(2001~2003)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가장 후순위 적용

<사업별 우선순위>

(1)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가) 표고 생산기반 지원

※ 법인경영체의 경우 다음의 ①~⑤순위의 재배자가 다수로 구성된 법인 순으로 선정

- ①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이상이고 표고자목 3만본이상을 재배하는 자
- ②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이상이고 표고자목 3만본미만을 재배하는 자
- ③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미만이고 표고자목 3만본이상을 재배하는 자
- ④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미만이고 표고자목 3만본미만을 재배하는 자
- ⑤ 기타 표고재배자(주산단지이외지역의 표고재배자에 대한 우선순위는 상기 ①~④ 순위적용)

(나) 밤 생산기반 지원

1) 밤작업로 시설 : 3ha이상 밤나무 재배자

2) 밤 방제장비지원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묘목대 지원

- ① 주산단지내에서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주산단지 이외 지역에서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③ 기타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3) 밤나무 토양개량

- ① 주산단지내에서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중에서 토양산성도의 피해가 심한 임지
- ② 주산단지 이외 지역에서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중에서 토양산성도의 피해가 심한 임지

(다) 대추 · 호도생산기반 지원

- ① 주산단지내 생산량 및 재배경험이 많은 대추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기타 대추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라) 퇴비발효기 지원

- ① 밤주산단지내 법인경영체 또는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 ② 기타 밤재배지 법인경영체 또는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2)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① 2004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② 기타 임산물의 집약경영이 가능한 생산단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3) 임업경영컨설팅 지원

- ①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
- ② 산림소득종합자금사업 지원(대상) 경영체
- ③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 ④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영체
- ⑤ 정책자금 지원(대상) 경영체
- ⑥ 경영규모가 큰 경영체 등 다음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

바. 기타 사항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사업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함.

## ② 조경수·분재생산

### 1. 목 적

- 조경수·분재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수출 확대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조경수·분재 전업농 육성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
- 조경수·분재 생산에 필요한 우량한 소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체계 확립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2006년
계	-	-	-	608	1,216
관상수토양개량	-	-	-	380	760
관상수토양개량살포기	-	-	-	228	456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가. 조경수·분재 생산지원은 산림종합자금으로 변경

나. 관상수 토양개량

#### (1) 사업내용

- 사업내용 : 탄산석회 및 목탄 등 관상수 재배지 토양개량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조경수 및 분재 등 관상수 생산자
    - ※ 자가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비율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ha당)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2)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ha)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00	475	380	380	-	95	-
○ 관상수토양개량	100	475	380	380	-	95	-

다. 관상수 토양살포기 지원

(1) 사업내용

- 사업내용 : 관상수재배지의 토양개량제 살포용 장비지원
- 지원대상자 : 조경수 및 분재 등 관상수 생산자
- 지원대상자 선정 : 한국조경수협회, 한국분재조합
  - ※ 자가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1개소당 총사업비 45,616천원

(2)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대)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456	228	228	-	-	228
○ 관상수토양 개량살포기	10	456	228	228	-	-	228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042-481-4195~6, 4214~5)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 조경수협회·분재조합 : 사무국(관상수 토양살포기 지원)
  - ※ 국고보조사업 또는 국고보조가 있는 용자사업은 현행대로 시·군·구가 담당부서이고 순수 용자사업의 경우는 산림조합이 담당부서가 됨.

다.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조경수협회장·분재조합 이사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또는 협회장(이사장)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 또는 협회장(이사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신청자에 통보(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라.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농림사업 시설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시설도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조정수협회·분재조합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시·군)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투자 또는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및 융자금 집행현황 점검 및 사업실적 유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 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보조사업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관상수·토양개량 살포기	2004년도	2008년도	5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준용

###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총공통-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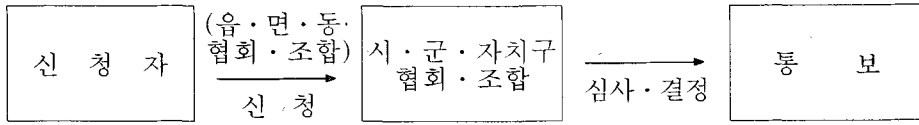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읍·면·동)

### 나. 신청자격

- (1) 조정수·분재생산 : 산림종합자금제도 참조
- (2) 관상수 토양개량·토양개량 살포기 지원
  - 조정수 및 분재생산자 등 관상수 생산자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조경수·분재 생산자금 등 순수 용자사업은 산림조합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조경수·분재 생산자금
  - 산림종합자금제도 참조
- 관상수 토양개량, 토양개량제 살포기 지원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 조경수·분재 생산자금 : 산림종합자금제도 참조
- (2) 관상수 토양개량, 토양개량제 살포기 지원
  - ① 자가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
  - ② 기타 조경수 및 분재 생산자

### ③ 산림복합경영

#### 1. 목 적

-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 도모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개발과 보전,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있게 추진
- 임업인 및 농업과 병행하여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산림내의 복합경영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재정지원)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2006년	
사업량(개소)	33	25	30	30	60	
사 업 비	계	4,692	2,726	3,270	2,289	6,540
	보 조	938	545	654	654	1,308
	용 자	1,408	818	981	(785)	1,962
	지방비	938	545	654	654	1,308
	자부담	1,408	818	981	981	1,962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되며, ( )내 용자금은 산림종합자금으로 별도 계상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재배사(표고자목구입비 지원은 제외) 등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임간방목(염소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최소 규모(10평이하)의 부대시설(창고)
- 지원대상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 ※ 임업인의 범위(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
      -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모델유형 및 지원기준
  - 단기소득사업중심형 :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50%이상
  - 목재생산중심형 :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70%이상
  - 복합산지관리형 : 산림면적(5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90%이상
  - ※ 개별을 실시한 후 밤나무 등 단일작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제외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총사업비 : 복합산림관리형(150백만원), 목재생산중심형(100백만원), 단기소득사업중심형(50백만원)
  - ※ 사업비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하되, 기존지원 대상지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복합경영	30개소	3,270	1,635	654	981	654	981

※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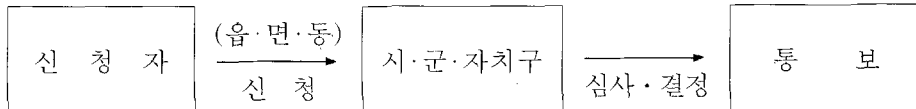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이라 한다)

나. 신청자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4항 관련 별지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 ② 조립·육림 등 산림경영을 위한 투자실적이 우수한 자
- ③ 임산물 생산·판매실적이 우수한 자
- ④ 기타 임업을 전념하며 복합경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042-481-4195~4196,4214~4215)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입지여건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추진일정 포함)
  - 자부담분 등 사업비(부대비용) 조달계획
  - 세부사업대상 품목 명시(단기·중기·장기 사업 등을 균형 있게 선정)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권자 : 시장·군수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 시·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 철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이 용도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지도·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추후 이를 분석하여 경영상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
  -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하고 산물의 시장성·판로 등 지속적인 경영정보를 제공

#### ○ 산림조합 : 대출금 사후관리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간	비 고
	부터	까지		
부대 시설	2004	2008	5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준용

###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총공통-9)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대출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49-1)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단, 최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 대상자 선정시 가장 후순위 적용)
- 기타 사항
  - 산림복합경영사업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함.

## ④ 산림종합자금제도

### 1. 목 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임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임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대출후 사후관리까지 일괄 담당함으로써 임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체의 자율성 존중
- 대출취급기관이 경영분석을 통하여 대출여부와 대출금액 및 대출방법을 결정하여 자금지원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
  - ※ 2004년도는 신규사업임을 감안 보조포함사업을 우선하여 대출지원하고, 2005년부터는 용자사업에 필요한 대출금은 산림종합자금에서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

###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자금지원) 및 제9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2006년
계	-	-	-	38,000	76,000
시설장비자금	-	-	-	10,000	20,000
운 영 자 금	-	-	-	28,000	56,000

-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 품목별 사업내용

##### - 표고생산자금 지원

- 사업내용 : 표고자목· 톱밥배지· 종균 등 표고생산 재료구입비,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표고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액 : 100백만원이내(법인경영체는 1,000백만원 이내)
- 융자단가 : 자목 1m<sup>3</sup>당 : 154천원(기준단가 220천원의 70%)  
※ 톱밥배지·종균 등 :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 - 밤방제탑재용차량

- 사업내용 : 밤방제장비의 탑재에 필요한 차량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융자90%, 자부담10%
- 융자조건 : 연리4%, 3년거치 7년상환
- 융자한도액 : 대당 11,000천원

##### - 야생화· 산채류 등 단기임산물 생산지원

- 사업내용 : 야생화, 허브식물(국산허브만지원), 산나물, 장뇌, 산약초, 산과실 잔디 등의 재배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야생화 등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2년상환(단, 장뇌재배비는 연리4.0% 10년거치 5년상환)
- 융자한도액· 단가 : 1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 임산물 생산장비지원

- 사업내용 : 밤수집기(밤재배지 관수시설 포함), 예초기, 약제살포기, 간벌 목분쇄기, 표고자동천공기, 침수통 등 생산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용자한도액·단가 : 1대당 10백만원 이내(밤재배지 관수시설은 50백만원 이내)

### 조경수·분재생산지원

- 사업내용 : 조경수 및 분재 생산을 위한 포지(온실)조성 등 재배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조경수 및 분재생산자
- 지원비율 : 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용자한도액 : 100백만원 이내
- 용자단가 : 조경수 - ha당 68,600천원(기준단가 98,000천원의 70%)  
분 재 - ha당 75,600천원(기준단가 108,000천원의 70%)

### 단기소득임산물가공시설

- 사업내용 : 단기임산물가공시설 지원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용자 80%, 자부담 20%
- 용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용자한도액 : 개소당 설계금액의 80%이내

### 단기임산물수집자금

- 사업내용 : 밤, 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집중 출하기에 수집·저장 한후 비출하기에 공급
-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비율 : 용자80%, 자부담 20%
- 용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임산물생산자직판장

- 사업내용 : 대량소비지 대도시(광역시 이상)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산지 임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

- 지원대상자 : 임산물 생산·가공법인(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임산물 생산·가공법인,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법인, 국내산 임산물을 가공하는 자본금 3억원 미만의 법인)
- 지원비율 : 직판장 임차비(국고용자 100%)
  - ※ 건물 또는 토지임차계약서를 근거로 한 실비용자 지원)
- 원료구입비 및 운영비 : 용자 80%, 자부담 20%
  - ※ 매장설치비, 쇼케이스(저온판매대) 등 인테리어 비용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 국고보조가 포함된 용자
  - 표고 : 용자 20%, 3년거치 7년상환
  - 밤 : 직업로(용자30%; 5년거치 5년상환), 방제장비(용자50% : 3년거치 7년상환)
  - 퇴비발효기 : 용자40%, 3년거치 7년상환
  - 대추·호도 : 용자 20%, 3년거치 7년상환
  - 포장디자인 개선 : 용자 20%, 3년거치 7년상환
  - 저장·건조시설 : 용자 20%, 3년거치 7년상환
  - 산림복합경영 : 용자 30%, 3년거치 7년상환
- 용자금리 : 연리 4%
- 지원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는 임업인(신규포함),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 지원제외
  - 해당 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
  - 임대, 위탁 등 직접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법인·유통가공업자·금융기관 총부채(금차대출신청액 포함)가 3억원이상인 개인
  - 종합자금 대출잔액(금차지원액 포함)이 5천만원 이상으로 회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영체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등록(제재) 중인 경우
  - 임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수산업, 농업종사자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비	비고
산림소득 종합자금	계	38,000	
	<input type="checkbox"/> 시설장비자금	10,000	
	○ 표고재배사	3,960	
	○ 표고재배단지	1,028	
	○ 밤작업로	780	
	○ 밤방제장비	120	
	○ 밤방제탑제용차량	495	
	○ 대추·호도생산시설	320	
	○ 저장·건조시설	3,297	
	<input type="checkbox"/> 운영자금	28,000	
	○ 표고생산자금	9,408	
	○ 단기임산물생산자금	2,309	
	○ 장뇌삼재배	560	
	○ 조경수·분재생산자금	11,838	
	○ 산림복합경영	785	
	○ 단기임산물수집자금	2,400	
	○ 생산자직판장	500	
○ 단기임산물가공시설	200		

※ '04년도는 보조 포함된 융자사업을 우선 지원하되, 시설장비자금, 운영자금 내의 변경지원은 가능함. 다만, 시설장비자금, 운영자금 상호간의 변경지원은 사전 산림청과 협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산림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042-481-4195~6, 4214~5)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 산림조합 : 사업담당부서

## 다. 자금지원결정

### ○ 사업신청

- 사업희망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조합에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지자체 산림관련부서 및 산림조합에 비치·안내하여 임업인의 편의 도모
  - 사후관리 및 점검·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신청이나 대출약정체결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 조경수·분재생산자의 신청자격

- 한국조경수협회 회원과 한국분재조합 조합원은 협회장 및 이사장의 추천(생산확인)을 받은자
- 비회원 및 비조합원은 산림조합장의 추천(생산확인)을 받은자
- 조경수·분재생산자금 신청시 제출서류(융자신청서) 1부.(별지 1호)

###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 자금지원결정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하여 자금지원 결정(단, 보조에 포함된 융자금은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 산림조합에 통보)
  - 산림조합에서는 사전에 지역특화시책, 권장품목 등 종합자금제 실시에 대하여 시·군과 사전 협의
  -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출적격여부, 대출금액 및 대출방법을 결정한 후 인허가 등 행정사항, 기술검토사항 기타 해당 경영체의 평판·신망 등에 관하여 해당 시·군의 의견을 요청

### ※ 조경수·분재 등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조경수 생산포지 1ha이상, 분재 생산시설 330㎡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이상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생산포지(시설)를 증설하고자 하는자

- 조경수 생산포지 1ha이상, 분재 생산시설 330㎡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이상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기존포지(시설)에서 보식 등 재배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조경수 및 분재 생산자
- 종합자금 지원상황을 수시로 해당 시·군에 통지(서식1)
  - 시·군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존 정책자금지원상황과 사업취소, 추가 지원 등 변경사항을 산림조합에 통지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심사시에는 이 지침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을 검토 분석한 후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
- 사업신청자가 희망하거나, 대상품목 또는 경영기술이 산림조합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와 협의하여 임업연구원이나 기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함
  -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탈락사유를 설명하고 보완 사항이나 추가준비사항 등을 안내 및 지도

○ 자금대출

- 정책여신 관련규정과 각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라 자금 대출
- 대상자가 소요되는 시기 및 금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출
  - ※ 사업별 대출한도액 준수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업외의 용도로 사용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
-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 산림종합자금 1억원이상 지원경영체가 매년 1회 임업경영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

※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지원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시·도지사)의 조사·확인 및 산림청장의 승인을 거쳐 당초 상환조건대로 상환하게 할 수 있음.

※ 대출약정체결시에 상기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를 지원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약정서를 첨부해야 함.

#### ○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산림조합에서는 세부시행지침이 수립·통보되는 즉시 이를 해당 시·군청 산림담당부서에 통지·송부
- 산림조합에서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림조합중앙회는 지역산림조합의 산림종합자금지원 추진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의 감사지도부 및 산림청에 보고
- 산림조합에서는 임업기술지도원을 활용하여 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임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과 행정·지도기관이 각각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분야나 적정투자규모에 대한 조언, 관련정보 제공, 교육이나 컨설팅 알선 등을 통해 임업인의 사업준비에 조언
  - ※ 산림조합 및 시·군청의 상담창구에는 서식 7호와 서식 7-1호에 의한 상담기록부를 비치하고 상담결과를 기록
- 종합자금 1억원이상(금회 지원금 포함) 지원경영체는 매년 1회 임업경영회계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 1억원 이상 지원경영체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집중관리
  - 대출취급기관은 이상징후가 있는 경영체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지도기관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경영컨설팅을 우선 지원
- 대출취급기관은 산림조합자금 5천만원이상 지원농가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 경영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대출취급기관의 경영상태 분석·평가결과 자료를 해당 농업경영체에 제공함과 동시에 동 자료를 축적하여 임업경영체 대한 컨설팅 등에 활용
- 지원대상 농가 선정시 컨설팅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에 대해 경영능력 평가 우대
- 시·군은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을 시·도를 통해 산림청에 보고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사업추진실적을 서식2호 내지 서식 6호에 따라 주기별로 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산림청과 시·도, 시·군에 보고 또는 통보
  - 매 회계연도 사업정산 결과보고는 다음 회계연도 3월20일까지
- 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름
- 정부시책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마. 사업비단가 참고자료

-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함

【별지 제1호 서식】

## 조경수(분재)생산자금 용자신청서

신청서	주소			전화번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신청 사업명					
생 산 자 금 (천원)	내 역				
	계	용 자	생산자 부담	기타	
세부사업계획		별 첨			
생 산 기 반 시 설	내 역				
	포지면적	시설규모(온실 등)		장비보유사항	
	m <sup>2</sup>	동,	m <sup>2</sup>	대	
영 농 경 력	년	월	~	년	월
최 종 학 력	년	월	학교 ( 졸업, 중퇴, 수료)		
영 농 교 육 이 수 사 항	기 간		교 육 분 야		실시기관명
	년	월	일		
	~	년	월	일	

-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2. 조경수(분재) 생산 사실확인 추천서  
 3. 농림수산정책자금 용자신청 자료

위와 같이     년도 조경수(분재) 생산자금 용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산림조합장 귀하

<붙임1>

## 세 부 사 업 계 획 서

생산수종별	소 재 지			지목	사용면적 (㎡)	수량 (본)	사업비 (천원)	비고
	읍 면	리	지번					

<붙임2>

## 조경수(분재)생산 사실확인 추천서

생산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포지(생산시설)소재지				생 산 상 황				
시·군·읍·면	리·동	지번	지목	수종	수고 (cm)	수량 (본)	수령 (년)	실제면적 (m <sup>2</sup> )
용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지원				제출처 : 산림조합				

위 생산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한국조경수협회장      인

한국분재조합장      인

○ ○ 군 산림조합장      인



<서식1호>

## 산림종합자금 지원현황

(2004. . , 취급사무소명)

(단위 : 백만원)

법인명 (농장명)	대표자 (연령)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총사업비		
			세부 사업종	사업 규모	중점추진 사업내용	착수 일자	종료 일자		계	융자	자부담
	( )	( - )						시설장비 자금			
								운영자금			
								계			
								지원누계			
	( )	( - )						시설장비 자금			
								운영자금			
								계			
								지원누계			
	( )	( - )									
합계		개소						시설장비 자금			
								운영자금			
								계			
								지원누계			

우리 사무소의 산림종합자금 지원현황을 위와 같이 통보드리니, 종합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지원대상자들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장(군수) 귀하

- (주) 1. 사업추진개요 : 종합자금지원을 통한 대상자의 향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기재  
 2. 중점추진내용 : 종합자금 사업내용중 대상자의 중점추진 사항을 기재  
 3. 지원누계 : 종합자금 대출잔액을 기재. 신규 지원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4. 통보시기 : 취급사무소에서 지원대상자 확정(변경 포함)시 수시 통보

<서식2호>

## 지역별 종합자금 용자지원현황

(기간, 산림조합중앙회)

(단위 : 백만원)

지 역			용자금지원		용도별		채권보전형태별				
										시·도	시·군
		소계(1)									
		비율	100.0	100.0							
		소계(n)									
		비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소 계	(1+⋯+n)										
비 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전국 합계											
비 율			100.0	100.0							

- (주) 1.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해당지역조합을 통해 각 시·도, 시·군에 통보  
 2. 보고주기 : 분기별

<서식3호>

## 세부사업별 종합자금 용자지원현황

(기간, 산림조합중앙회)

(단위 : 백만원)

지 역	세부사업별	용자금지원		경 영 형 태 별				자 금 용 도 별	
		건수	금액	개 인		법 인		시설장비자금	운영자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계(1)								
	비율	100.0	100.0						
	소계(n)								
	비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1+⋯+n)								
비 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국 합 계									
비 율		100.0	100.0						

- (주) 1.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해당지역조합을 통해 각 시·도에 통보  
 2. 표고재배사, 밤작업로, 대추·호도생산자금, 표고생산자금, 조경수·분재생산자금 등 세부사업별로 구분  
 3. 보고주기 : 월별

## 지역별 사업비투입내역

(산림조합중앙회)

(단위 : 백만원)

지 역			사업비합계			자부담			용자지원		
시·도	시·군	취급사무소	계	시설장비	운 영	계	시설장비	운 영	계	시설장비	운 영
	소계(1)										
	비율		A	A1	A2	B	B1	B2	C	C1	C2
	소계(n)										
	비율										
	⋮	⋮	⋮			⋮			⋮		
	⋮	⋮	⋮			⋮			⋮		
	⋮	⋮	⋮			⋮			⋮		
사·도	소계	(1+...+n)									
	비율										
	⋮	⋮	⋮			⋮			⋮		
	⋮	⋮	⋮			⋮			⋮		
	⋮	⋮	⋮			⋮			⋮		
전국	합계										
	비율										

- (주) 1.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해당지역조합을 통해 각 시·도에 통보  
 2. 비율계산 :  $A=B+C=100(\%)$ ,  $A= A1+A2=100\%$ ,  $B=B1+B2$ ,  $C=C1+C2$   
 3. 보고주기 : 분기별. 매보고시마다 누계기준으로 부속보고서 첨부

<서식5호>

## 세부사업별 사업비 투입내역

(산림조합중앙회)

세 부 사업별	사업비합계			용자지원(백만원)			자부담(백만원)		
	계 (비율)	시설장비	운영자금	계 (비율)	시설장비	운영자금	계 (비율)	시설장비	운영자금
	A	A1	A2	B	B1	B2	C	C1	C1
합 계									

- (주) 1. 세부사업별 : 표고재배사, 밤작업로, 대추·호도생산자금, 표고생산자금, 조경수·분재생산자금, 산림복합경영 등으로 구분
2.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해당지역조합을 통해 각 시·도에 통보
3. 비율계산 :  $A=B+C=100(\%)$ ,  $A=A1+A2=100\%$ ,  $B=B1+B2$ ,  $C=C1+C2$
4. 보고주기 : 월별. 매보고시마다 누계기준으로 부속보고서 첨부

<서식6호>

## 산림종합자금지원 정산실적 보고

(산림조합중앙회)

(단위 : 천원)

성 명 (법인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세 부 사업명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지 원 계 획	집 행 실 적 (정산)	차 년 도 이 월 액	불 용 또 는 미 집행	착 공 일	준 공 일
합계				%						

- (주) 1.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생산자금 지원하는 계획 대비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단지, 대, km 등으로 기재
2.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생산자금 지원하는 표고재배사, 밤작업로, 대추·호도생산자금, 표고생산자금, 조경수·분재생산자금, 산림복합경영 등을 기재
3.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4.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시군별, 사업주체별(개별농가, 농업법인)로 위 양식에 맞추어 세부정산실적을 별지로 작성, 첨부
5. 산림청 자금운용부서에 보고
6. 제출기한 : 사업연도 익년 3.20일까지

<서식7호>

##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건별)

연 번	2004 -
일 자	년 월 일
상 담 자	
상담장소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상 담 방 법	내방, 방문 전화, 서면	
주 소					전 화		
종 분 사 야	농업소득 규 모	백만원	경 영 력	년	경 영 규 모		
경 영 기록 방	부 채 규 모	백만원	총자산의 추정가액	백만원	유동자산 (현금예금)	백만원	
문 의 내 용				상 담 내 용			
회 망 사업분야		투 자 계 획 (백만원)	종합자금		종합자금 신청계획 (백만원)	시 장 자	설 비 금
			기타용자			운 자	영 금
			자 부 담				
			합 계				
사업준비 자문내용							
상담자 의견							
상담후 조치사항							

- (주) 1.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2. 상담자의견 : 사업의 타당성, 투자규모의 적정성, 사업준비정도, 향후 지원 혹은 추가상담, 투자유도방향, 타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지원방향 등을 간략히 서술

<서식7-1호>

##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총괄)

연번	일 자	성 명	전 화	투자계획(백만원)					상담내용
				합 계	자부담	기 타 용 자	종 합 자 금		
							시설장비자금	운영자금	
2004									
-									
소계		명							

(주)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서식9호>

## 임산물 생산·가공법인 직거래판매장 설치 실적보고

### 1. 임산물직판장 개설조합 현황

법 인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회 원 수	명	법인등록기관	

### 2. 임산물직판장 설치 계획 대 실적

○ 설치장소

구 분	단위	시설규모		사업비 투자액(천원)						
		계획	실적	계 획			실 적			
				계	국고 응자	자부담	계	국고 응자	자부담	
<b>계</b>										
○임산물직판장										
○원료구입										
○매장설치비										

※ 직판장 건물 또는 토지 임차계약서 사본 첨부

위와 같이 임산물직판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군 산림조합장 귀하

## 임산물생산·가공법인 직거래판매장 사업지원 신청서

### 1. 신청인 현황

법 인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회 원 수	명	법인등록기관	

※ 법인등록 사본 첨부

### 2. 지원신청내용

○ 설치계획

구 분	단위	규모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고용자	자부담	
계						
○ 임산물직판장	m <sup>2</sup>					
○ 원료구입	톤					
○ 매장설치비						

○ 임산물직판장 설치 예정지 :

- 직판장 임차건물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소유자 주소 :

### 3. 연간 판매계획

(단위 : kg, 천원)

품 목	1일평균		연간( 일)운영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위와 같이 임산물직판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군 산림조합장 귀하

59 목재이용·가공 및 국산재활용 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이용과(과장 최수권, 임업사무관 남화여)입니다.

① 목재이용가공지원

**1. 목 적**

- 제재시설 및 목탄·목초액시설 등 목재를 이용·가공하는 시설의 신설·교체·증설을 지원하여 관련산업 육성
- 보드류 시설의 신설·교체·증설을 통한 관련산업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목재 이용·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규모화 지원
- 시설 현대화를 통한 국산재 이용 및 폐목재 재활용 촉진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 산림법 제109조 제1항(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가. 목가공시설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년이후	
사업량	441개소	20개소	8개소	5개소	30개소	
사 비	계	125,787	7,360	3,072	1,295	7,770
	보 조	1,860	-	-	-	-
	용 자	86,129	5,888	2,458	1,036	6,216
	지방비	1,860	-	-	-	-
자부담	35,938	1,472	614	259	1,554	

나. 보드류시설 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92~'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년이후	
사업량	28개소	6개소	5개소	5개소	24개소	
사 비	계	87,529	6,250	7,500	4,375	21,000
	용자	61,270	5,000	6,000	3,500	16,800
	자부담	26,259	1,250	1,500	875	4,200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목가공시설 지원

(가) 사업내용

- 칩·통나무·제재(목조주택용 자재가공 포함)·목공예(목각 포함)·목질유기질비료·목재방부·목탄·목초액 등 목재를 이용·가공하는 시설의 신설·교체·증설 지원

(나) 지원대상자

- 목재 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로서 노후시설 교체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
- 가공공장 신설을 위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를 필하였거나 필하고자 하는 자

(다)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80% 용자(국고 용자 80%, 자부담 20%)
- 용자금리 : 연리 4%
- 용자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라) 지원대상 제외자

- 최근 3년(2001~2003)중 2개년 이상 가동율이 30%이하를 기록한 자
- 최근 3년간(2001~2003) 이용가공 시설자금 회수 경력이 있는 자

(마)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 자		
○ 목가공시설 지원	5개소	1,295	1,036	-	1,036	-	259

(2) 보드류시설 지원

(가) 사업내용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의 신설·교체·증설 지원

(나) 지원대상자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설·교체·증설하고자 하는 자

(다) 지원조건

-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80% 용자(국고 용자 80%, 자부담 20%)
- 용 자 금 리 : 연리 5.5%
- 용 자 기 간 :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라) 지원대상 제외자

- 최근 3년(2001~2003)중 2개년 이상 가동율이 30%이하를 기록한 자
- 최근 3년간(2001~2003) 보드류 시설자금 회수 경력이 있는 자

(마)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 자		
○ 보드류시설 지원	5개소	4,375	3,500	-	3,500	-	875

## <추진체계>

### 가. 목가공시설 지원

(1)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목재이용과 (042-481-4134~5)
- 산림조합(중앙회) : 관련부서

(3) 자금지원 예정자 : 목재 이용가공시설을 신설·교체·증설하고자 하는 자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시행 시기(시행시기가 앞서면 우선 순위 부여 가능)
  - 사업경영 종사여부 및 사업실적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 능력 및 경영능력 등

(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관할 산림조합에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관할 산림조합장

(다) 사업비 지원방법

- 산림조합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조합도지회장을 경유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융자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규정에 의거 지원



## 나 보드류시설 지원

(1)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목재이용과 (042-481-4134~5)
- 한국합판보드협회 (02-780-3631)
- 산림조합(중앙회) : 관련부서

(3) 자금지원 예정자 : 지원대상자격을 가진 보드류 생산업체로서 한국합판보드협회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지원 신청한 업체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한국합판보드협회장이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산림청장에게 추천하고, 산림청장이 사업대상자를 선정
- 대상자 추천(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시행 시기(시행시기가 앞서면 우선 순위 부여 가능)
  - 사업경영 종사여부 및 사업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한국합판보드협회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산림청장

(다) 사업비 지원방법

- 한국합판보드협회장은 지원대상자를 산림청장에게 추천하고 산림청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한국합판보드협회장에게 통보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융자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규정에 의거 지원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산림조합(중앙회)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용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이 용도에 맞게 적정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 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용자금 사후관리
- 한국합판보드협회
  - 용자금 지원에 의한 보드류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

### 나. 보 고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용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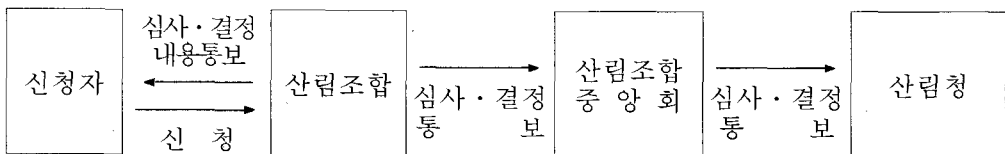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목가공시설 지원 : 지역 산림조합
- 보드류시설 지원 : 한국합판보드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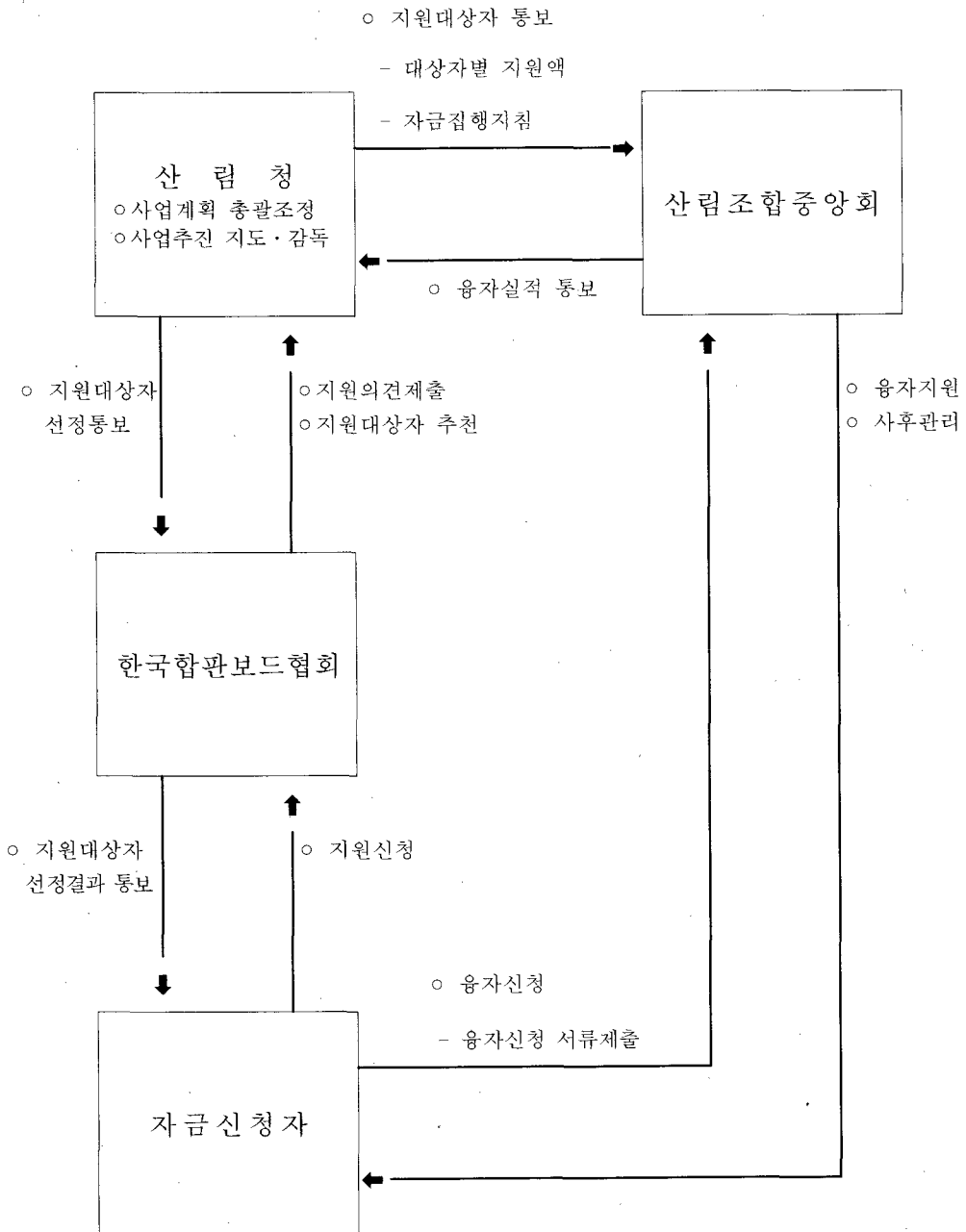
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과 같음

###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목가공시설 지원



○ 보드류시설 지원



라. 구비서류

○ 목가공시설 지원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 보드류시설 지원

- 사업신청서 1부(별첨 1)
- 사업계획서 1부(별첨 2)
- 대출신청자료(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마. 기타 사항

-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4년도 추진체계의 자금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함.

【별첨1】

#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자	업 체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법인소재			
		공장소재			
	법인형태		종업원수	명(남,여)	
	공장업종		주생산품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용자	자부담	
<p>농림사업 실시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또는날인)</p> <p>산림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첨2)1부</p> <p style="text-align: center;">2. 대출신청자료(별지제4호서식 : 제9조 제4항 관련)1부</p>					

【별첨2】

# 사 업 계 획 서

<사업계획서에 포함 작성할 내용> - - - - - 관련자료는 첨부

1. 시설계획 개요(설치위치, 1일 및 연간생산능력, 원자재별 사용량, 가동예정일)
2. 생산시설 현황
3. 사업운영 실적
  - 연도별 합판 및 보드류 생산실적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4. 시설 설치계획(지원희망 시설만 기재)

생산공정명	기계명	규격	제조회사	수량	금 액			비 고
					계	용 자	자부담	

- 기계이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기계명”란에 “시설명”을 “수량”란에 “시설 면적”을 기재
- “비고”란에는 교체, 신설, 증설여부를 기재
- ※ 동 내역은 은행에 통보되어 대출시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정확히 기재

5. 월별 자금투자 계획
6.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7. 시설설치시 투자효과 분석
8. 법인개요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정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② 국산재 활용지원

### 1. 목 적

- 국산재 구입자금 및 수집·활용장비 지원을 통한 국산재 이용 촉진
- 폐목재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 2. 시책 및 추진방향

- 국산재 및 폐목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목재가공업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 국산재 수집·활용장비를 지원하여 국산재 이용 증진

###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 산림법 제109조 제1항(자금지원)

### 4. 연도별 지원계획

가. 국산원자재 구입자금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년이후
사 업 량		1,662천m <sup>3</sup>	113천m <sup>3</sup>	94천m <sup>3</sup>	49천m <sup>3</sup>	199천m <sup>3</sup>
사 업 비	계	96,132	9,360	7,840	4,083	16,517
	보 조	-	-	-	-	-
	용 자	67,292	6,552	5,488	2,858	11,562
	지방비	-	-	-	-	-
	자부담	28,840	2,808	2,352	1,225	4,955

나.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92~'01년	2002년	2004년	2004년 (예산안)	2005이후	
사업량	-	80천m <sup>3</sup>	204천톤	204천톤	845천톤	
사업비	계	-	3,040	7,748	7,748	32,110
	보조	-	-	-	-	-
	용자	2,128	5,424	5,424	5,424	22,477
	지방비	-	-	-	-	-
자부담	912	2,324	2,324	2,324	9,633	

다. 국산재 수집·활용장비 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92~'00년	2002년	2004년	2004년 (예산안)	2005년이후	
사업량	127대	12대	12대	12대	36대	
사업비	계	12,289	666	666	666	1,998
	보조	8,602	466	466	333	999
	용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3,687	200	200	333	999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국산원자재 구입자금 지원

(가) 사업내용

- 국산 원목, 제재목 등의 구입자금 지원



(나) 지원대상자

- 목재 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산 원목 또는 이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예 : 가구·탄약박스 제조용 자재, 방부용·조경시설재용 목재, 목조주택 내·외장재 등 건축용 자재 등)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하여 책·걸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

(다)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용자(국고 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한도액 : 사업자당 연간 3억원 이내, 다만, 목재가공업체의 경우 국산 원목을 연간 8,000m<sup>3</sup>이상 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용자금리 : 연리 5.5%
- 용자기간 : 5년(3년 거치 2년 상환)

(라) 지원대상 제외자

- 최근 3년(2001~2003)중 2개년 이상 가동율이 30%이하를 기록한 자
- 최근 3년간(2001~2003) 원자재 구입비 지원자금 회수 경력이 있는 자

(마)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 자		
○ 국산재 구입자금	49천 m <sup>3</sup>	4,083	2,858	-	2,858	-	1,225

(2)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

(가) 사업내용

-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

(나) 지원대상자

- 임산물 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로서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용자(국고 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금리 : 연리 5.5%
- 용자기간 : 5년(3년 거치 2년 상환)

(라) 지원대상 제외자

- 최근 3년(2001~2003)중 2개년 이상 가동율이 30%이하를 기록한 자
- 최근 3년간(2001~2003) 폐목재 구입비 지원자금 회수 경력이 있는 자

(마)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 자		
○ 폐목재 구입자금	204천톤	7,748	5,424	-	5,424	-	2,324

(3) 국산재 수집·활용장비 구입 지원

(가) 사업내용

- 국산재 생산비 절감 및 이용도 제고에 필요한 수집·활용장비 구입 지원

(나)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다)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라)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 자		
○ 국산재 수집·활용 장비 지원	12세트	666	333	333	-	-	333

## <추진체계>

가. 국산원자재 및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

(1)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목재이용과 (042-481-4134~5)
- 산림조합(중앙회) : 관련부서

(3) 자금지원 예정자

- 국산재(원목·가공품 포함)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시행 시기(시행시기가 앞서면 우선 순위 부여 가능)
  - 사업경영 종사여부 및 사업실적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관할 산림조합에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관할 산림조합장

(다) 사업비 지원방법

- 산림조합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조합도지회장을 경유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융자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규정에 의거 지원

나. 국산재 수집·활용장비 지원

(1)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목재이용과 (042-481-4131~2)
- 산림조합중앙회 : 임산유통부(02-3434-7184~5)

(3) 자금지원 예정자 : 산림조합(중앙회)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산림청에 제출(필요시 산림조합중앙회장이 현지확인)

(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지원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절차에 따라 산림청에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산림청장

(다) 사업비 지원방법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라)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은 정산
  - 농림사업 시설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시설 도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산림조합(중앙회)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및 용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 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용자금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 터	까 지		
국산재 수집·활용장비 - 차량 및 운반구 - 목재 가공장비	2004년도 2004년도	2009년도 2012년도	5년간 8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준용 »(차량 및 운반구 준용)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준용)

### 나. 보 고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용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을 책임하에 실시하고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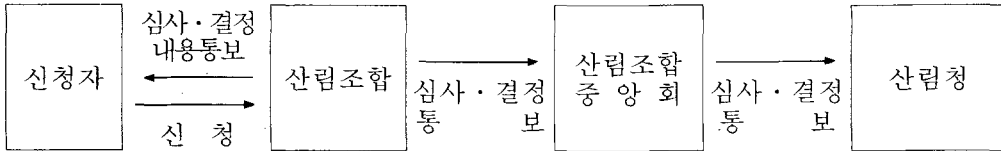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청, 지역산림조합

- 산림청 : 국산재 수집·활용장비 지원
- 산림조합 : 국산원자재 및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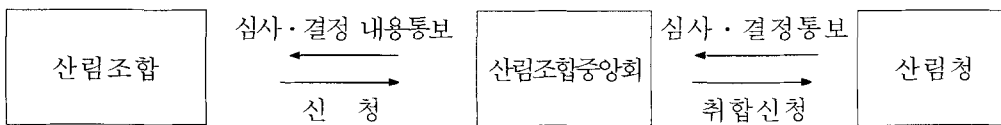
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과 같음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국산원자재 및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



○ 국산재 수집운반장비 지원



라. 구비서류

○ 국산원자재 및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 등록증(국산원자재 구입자금 신청자에 한함)

○ 국산재 수집·활용장비 지원

- 국산재 수집·활용장비 지원 사업계획서 1부.(필요성, 타당성, 사업효과, 운영방안 포함)

마. 기타 사항

- 국산재활용지원 사업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4년도 추진체계의 자금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함.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지원과(과장 이경일, 행정사무관 김영철)입니다.

## 1. 목 적

- 사유림경영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산림소유자, 조합원을 위한 기술지도사업에 주력하는 조합 육성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림조합의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안정과 임산소득을 보장하는 건전한 생산자단체로 육성
  - 『산림조합발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및 『산림조합발전 기획단』에서 도출된 의견을 감안하여 건전한 산림조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
- 임업기술지도 및 대리경영사업을 내실화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하고 산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2(산림사업의 시행자)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재정지원)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년 이후
사업량		146조합	146조합	146조합	146조합	146조합
사업비	계	93,283	26,514	30,602	21,608	134,028
	보 조	9,000	701	701	584	1,314
	용 자	73,265	25,112	29,200	20,440	131,400
	지방비	6,907	701	701	584	1,314
	자부담	4,111	-	-	-	-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조건	사업시행체계
보조	○ 조합운영비 보조	146개조합	조합당 : 8백만원 (국고 50%, 지방비 50%)	산림청 → 시·도 → 시·군 → 조합
용자	○ 조합사업운영 (조합운영자금, 자체 특화사업, 시설자금, 경영개선자금 등)	146개조합	20,440백만원, 연리3% 3년거치 2년상환(단기) 3년거치 7년상환(장기)	산림청 → 산조중앙회 → 조합

####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보조농특회계, 용자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146조합	21,608	21,024	584	20,440	584	-
- 조합운영비	146조합	1,168	584	584	-	584	-
- 조합육성자금	146조합	20,440	20,440	-	20,440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조합운영비 보조 : 시장·군수
- 조합육성자금 용자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 (042-481-4211~3)
- 시·도 : 산림관련 부서
- 산림조합중앙회 : 금융부(02-3434-7221~3), 회원지원부(02-3434-7204~6)
- 시·군·자치구 : 산림관련 부서

## 다. 자금지원 예정자

### (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자체특화사업 및 신규개발사업비에 우선지원
- 임산물공판·수매·수집사업비 지원
- 각종 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사업 운영자금 지원
- 청사, 유통시설, 금융점포 설치비 등 지원
  - ※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자금(직매장, 집하장시설 등)중 자부담분에 대한 적정규모 용자지원
- 조합의 건전한 경영 및 자립촉진을 위한 경영자금 용자지원

### (2) 대출선정절차

- 산림조합장은 2004년 1월까지 조합육성자금을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신청
- 중앙회장은 지원기준을 마련 검토결정한 후 산림청장에게 보고(2004년 2월까지)
- 중앙회(소속기관 포함) 직영사업은 산림청장의 승인후 용자 확행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지도·감독
- 산림조합중앙회 : 대출금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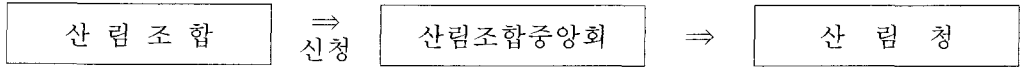
### 나. 보고·기타

- 시·도는 산림청에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 중앙회는 용자금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
- 보조·용자사업은 대상자 및 대상사업을 신중 검토 실행
- 산림조합은 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대리경영확대계획을 수립 산주가 직접경영하지 않는 모든 산림으로 확대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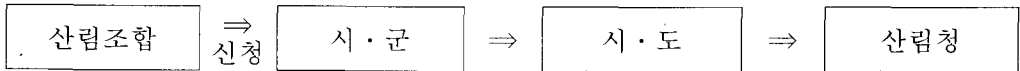
### 가. 산림조합육성자금 용자사업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신청자격 : 산림조합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나. 조합운영비 보조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지원과(과장 이경일, 행정사무관 윤병현)입니다.  
단, 임산물 수출촉진은 국제협력과(과장 박주린, 행정사무관 이미라)입니다.

### ① 임산물유통구조개선

#### 1. 목 적

- 임산물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자 소득 제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수급안정을 도모
- 임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로 외화획득 및 농산촌 소득증대 도모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을 위한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 지원
- 임산물의 생산·가격 등 정보제공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지원
- 물류비, 수출임산물 기계장비, 해외시장 개척 활동비 및 수출원자재 구입비 등의 지원을 통한 임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

####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재정지원), 제8조(유통구조개선)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농수산물의 수출촉진)

#### 4. 연도별 지원계획

(1) 조경수유통단지조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2006년
사업량(개소)	-	-	-	-	-	-
사 업 비	계				800	
	보 조				560	
	자부담				240	

## (2) 임업후계자 직판장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2006년
사업량(개소)	-	-	-	-	1개소	-
사업비	계	-	-	-	1,000	-
	보 조	-	-	-	700	-
	자부담	-	-	-	300	-

## (3) 공주밤전문조합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2006년	
사업량(개소)	-	-	-	-	1개소	-	
사업비	계	-	-	-	800	-	
	보 조	-	-	-	400	-	
	용 자	-	-	-	-	-	
	지방비	-	-	-	-	400	-
	자부담	-	-	-	-	-	-

## (4) 임산물 유통정보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2006년	
사업량(개소)	-	-	-	-	-	-	
사업비	계	347	687	458	453	487	974
	보 조	347	687	458	453	487	974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 (5)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2006년	
사업량(개소)	175개소	212개소	202개소	250개소	250개소	500개소	
사업비	계	3,803	2,200	2,100	2,580	2,580	5,160
	보 조	1,037	440	420	516	516	1,032
	용 자	250	20	20	20	20	40
	지방비	650	440	420	516	516	1,032
	자부담	1,866	1,300	1,240	1,528	1,528	3,056

(6) 임산물수출촉진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2007년
사업량(톤)							
사 업 비	계	18,671	9,679	12,879	13,467	14,204	44,420
	보 조	5,852	2,997	2,997	3,293	3,793	12,014
	용 자	5,600	2,800	5,040	5,040	5,040	15,120
	지방비	-	-	-	-	-	-
	자부담	7,219	3,882	4,842	5,134	5,371	17,286

※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2004년도 사업비 내용 참조

5. 2004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조경수유통단지조성

- 사업내용 : 조경수 관상자원의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부지 및 전 시포지조성비, 시설비 및 설계비 등, 단 부지구입비는 제외) 지원
- 지원대상자 : 한국조경수협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국고지원한도액 : 560백만원

(2) 임업후계자 임산물직판장

- 사업내용 : 임업후계자 및 산주생산 임산물의 공동출하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직거래 판매를 통한 생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산물직판장 조성비(직판장 부지조성비, 시설비 및 설계비 등) 지원 단, 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대상자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국고지원한도액 : 700백만원

### (3) 밤 전문조합지원

- 사업내용 : 밤 전문조합 저장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입로(교량) 개설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공주밤산림조합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국고지원한도액 : 400백만원

### (4) 임산물 유통정보화

- 사업내용
  - 유통정보시스템 : 임산물에 관한 생산·가격 정보를 DB화하여, 전국의 임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제공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정보화마인드가 부족한 임업인들에게 홈페이지구축을 지원하여 정보획득 및 임산물 판로확보 등 직거래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자
  -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신지식임업인, 독립가, 임업후계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산물생산자직판장 운영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 (5)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 사업내용
  - 임산물표준출하 : 산림청장이 고시 또는 승인한 임산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임산물에 한하여 포장자재비 일부 지원
  - 포장디자인개선 : 단기소득임산물의 포장디자인 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 지원우선순위
    - 친환경인증(표시)/품질인증을 받은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규격출하를 하는 기타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임산물표준출하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포장디자인개선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국고용자 20%, 자부담 40%

(6) 임산물 수출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임산물 수출업체

- 지원시설의 종류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 임산물 포장·운송비, 수출임산물 기계장비, 포장디자인 개발비, 임산물 운송차량 구입비, 수출촉진 검역비 지원, 분재표찰 제작비, 안전성 확보지원
- 우수임산물 해외개척사업 : 수출홍보물제작, 시장개척단파견, 한·일 밤 간담회 지원, 해외시장정보조사
-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 수출 목제품 원자재 구매 지원

○ 지원조건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국 고 지 원				자부담
		소계	지원유형	지원비율	2004예산	
계	14,204	8,833			8,833	5,371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	6,654	3,443			3,443	3,211
- 우수임산물 포장·운송비	4,604	2,302	보조	50%	2,302	2,302
- 포장디자인 개발	30	21	보조	70%	21	9
- 수출촉진 검역비 지원	100	100	보조	100%	100	-
- 수출 임산물 기계장비 구입	1,600	800	보조	50%	800	800
- 수출 임산물 운송차량 구입	200	100	보조	50%	100	100
- 분재표찰 제작비	20	20	보조	100%	20	-
- 연구용역	80	80	직접수행	-	80	-
- 수출 임산물 안전성 확보	20	20	보조	100%	20	-
우수임산물 시장개척사업	350	350			350	
- 수출홍보물 제작	76	76	보조	100%	76	-
- 시장개척단 파견	200	200	보조	100%	200	-
- 한·일 밤 간담회	24	24	보조	100%	24	-
- 임산물무역정보개정	50	50	직접수행	-	50	-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7,200	5,040	융자	70%	5,040	2,160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일반, 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9,134	11,516	6,456	5,040 (20)	916	7,439
○조경수 유통단지	1개소	800	560	560	-	-	240
○임업후계자 직관장	1개소	1,000	700	700	-	-	300
○유통정보시스템	1식	352	352	352	-	-	-
○밤전문조합지원	1개소	800	400	400	-	400	-
○임업인 홈페이지 구축	90명	135	135	135	-	-	-
○임산물표준출하지원	248개소	2,480	496	496	-	496	1,488
○포장디자인개선	2개소	100	40	20	(20)	20	40
○임산물수출촉진		13,467	8,833	3,793	5,040	-	5,371
-우수임산물수출활성화		6,106	3,443	3,443	-	-	3,211
-우수임산물시장개척		161	350	350	-	-	-
-수출원자재구매지원		7,200	5,040	-	5,040	-	2,160

※ 위사업비(임산물수출촉진제외) 중 20%범위내에서 지원비율·사업단비를 준수하여 사업간 변경지원 가능하고 그결과를 산림청에 통보하며, 20%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과 협의(용자금은 산림소득종합자금에서 지원)

<추진체계>

가. 조경수생산 유통단지조성

(1) 사업주관기관 : 한국조경수협회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042-481-4195~6)
- 한국조경수협회 : 사무국(02-961-2707)

(3) 자금지원예정자 : 한국조경수협회



#### (4) 사업추진체계

##### ○ 사업시행절차

- 조경수생산 유통단지조성 사업계획수립 제출(한국조경수협회)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승인(산림청) → 조경수생산 유통단지조성 국고보조사업비 신청(한국조경수협회) → 예산 및 자금배정(산림청) → 사업시행(한국조경수협회)

#### (5) 사업시행

#####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를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사전 부지확보 여부, 자부담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

##### (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한국조경수협회장은 사전 부지 및 자부담분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 및 월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다)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사업비는 공사추진실적에 따라 단계별 자금 배정
-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함.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 기타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 착수할 때부터 집행

## (6)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 나. 임업후계자 임산물직판장조성

(1) 사업주관기관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042-481-4195~6)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 사무국(042-603-5959)

(3) 자금지원예정자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4)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절차
  - 임산물직판장조성 사업계획수립 제출(한국임업후계자협회)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승인(산림청) → 임산물직판장조성 국고보조사업비 신청(한국임업후계자협회) → 예산 및 자금배정(산림청) → 사업시행(한국임업후계자협회)

(5)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를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사전 부지확보 여부, 자부담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

(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은 사전 부지 및 자부담분 사업비를 확보하고 직관장조성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 및 월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다)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사업비는 공사추진실적에 따라 단계별 자금 배정
-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함.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 기타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 착수할 때부터 집행

(6)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다. 밤 전문조합 저장시설 진입로개설

(1) 사업주관기관 : 충남도(공주시)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042-481-4195~6)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3) 자금지원예정자 : 지방자치단체(충남도)

(4)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절차

- 사업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사업주관기관) → 국고보조사업비 신청  
(사업주관기관) → 예산 및 자금배정(산림청) → 사업시행(사업주관기관)

(5)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를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사전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별법령에 규정하는 인·허가 검토, 부지 확보 여부,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등

(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주관기관은 사전 부지 및 지방비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지 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 및 월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다) 사업비 지원방법

- 보조금 내시 및 자금배정 : 국고보조 사업비는 공사추진실적에 따라 산림청에서 단계별 자금 배정

(6)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라. 임산물유통정보화

(1) 사업주관기관

-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 산림청, 시·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042-481-4195~6)
- 시·도(시·군) : 산림과(녹지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과) 등 산림담당부서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전자상거래팀(031-299-8989)

(3) 자금지원예정자

-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 신지식임업인, 독립가, 임업후계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산물생산자 직판장 운영자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 시·도지사가 선정

(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수립하여 산림청에 제출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 사업희망자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제출

(다) 사업비 지원방법

- 집행절차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함.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마.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1)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이라 한다)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042-481-4195~6)
- 시·도(시·군) : 산림과(녹지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과) 등 산림담당부서

(3) 자금지원예정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나)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용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사업비 지원시 포장자재의 표준규격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서상 물량의 50%이상 출하 되었음을 확인한 후 지원
- 용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용자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바. 임산물 수출촉진

(1)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국제협력과(042-481-4145~7)
- 산림조합중앙회 : 임산유통부(02-3434-7182)
-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진흥처 농산부(02-6300-1352~6)

(3) 자금지원예정자 : 임산물 수출업체

(4) 사업시행

- 사업계획 작성 및 변경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집행방법
  - 자금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보조금 집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집행함.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6) 기타사항

○ 사업시행자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 산림조합중앙회장
- 우수임산물 해외개척사업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행정사항>

가. 조경수생산 유통단지조성

(1) 사후관리

- 한국조경수협회장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본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대시설물	준공일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2) 보고·기타

- 한국조경수협회장은 사업계획서를 2004.1.20까지 산림청(사유림지원과)에 제출
- 한국조경수협회장은 단지조성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공사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10일까지 보고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한국조경수협회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 (보조금 정산실적)를 사업 실행연도 12월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 한국조경수협회는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후 시행



나. 임업후계자 임산물 직판장조성

(1) 사후관리

-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본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대시설물	준공일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2) 보고·기타

-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은 사업계획서를 2004.1.20까지 산림청(사유림지원과)에 제출
-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은 직판장조성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공사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10일까지 보고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조금 정산실적)를 사업 실행연도 12월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후 시행

다. 밤 전문조합 저장시설 진입로 개설

(1)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본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2) 보고·기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를 2004.1.20까지 산림청(사유림지원과)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공사추진 실적은 매분기 익월10일까지 보고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사업주관기관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조금 정산실적)를 사업 실행연도 12월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후 시행

라. 임산물 유통정보화

(1) 사후관리

- 유통정보의 신속제공 및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관리

(2) 보고·기타

-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실적 및 집행실적을 정산보고

마.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1)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2)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바. 임산물 수출촉진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 점검(현장점검 포함)
- 수출실적 점검 및 사업실적 평가 후 차등지원 등 조치
- 수출임산물 기계장비구입 및 운송차량 구입사업은 사업비 지원후 기계장비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경우 시정조치(사업비 회수조치 등)
- 수출원자재 구매지원 대상자는 지원받은 연도의 수출실적을 연도 종료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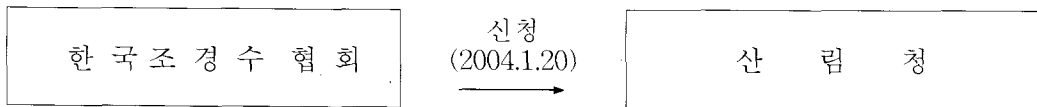
(2) 보고·기타

- 연간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보고 및 정산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안내

### 가. 조경수생산 유통단지조성

- (1)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청
- (2) 신청자격 : 한국조경수협회
- (3)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 (4)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 나. 임산물 유통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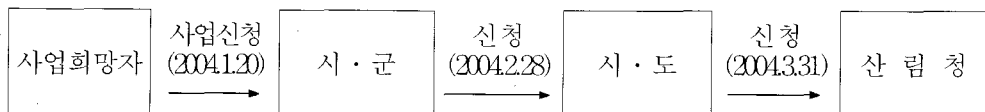
- (1) 신청서 제출기관

-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시·군

- (2) 신청자격

-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신지식임업인, 독립가, 임업후계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산물생산자직판장 운영자

- (3)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임업인홈페이지구축)



- (4) 구비서류(임업인홈페이지구축)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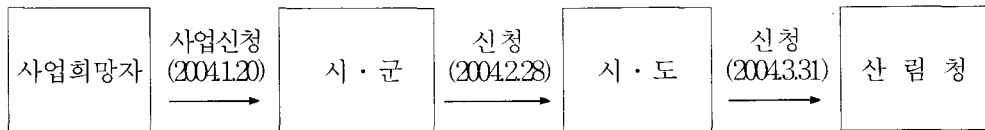
- 우선순위 : 신지식임업인, 독립가, 임업후계자, 임산물생산자(단체 포함), 임산물 생산자 직관장 운영자 중 PC보유자, 인터넷 사용가능자 및 홈페이지 운영능력이 있는 자

다.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2) 신청자격 :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3)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4)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주산단지내의 생산자 및 시·군의 산림조합 또는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지역내의 생산자 및 산림조합 또는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라. 임산물 수출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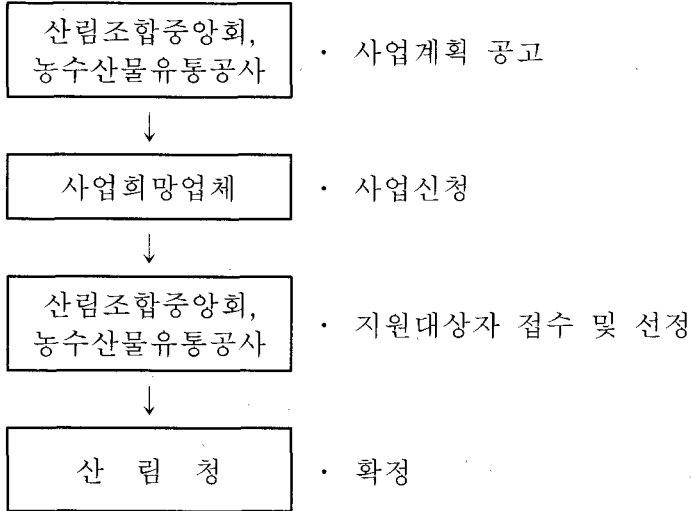
(1) 신청서 제출기관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 산림조합중앙회장
- 우수임산물 시장개척사업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신청자격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3) 신청절차



(4) 구비서류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제8호 서식)
- 우수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우선순위(자금배정)
  - 과거 2개년도 임산물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당해연도 임산물 수출신용장 수취업체
  - 당해연도 임산물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신청절차
  - 일반공고→지원대상자 신청서 접수→지원대상자 선정 및 연간 지원금 배정

【별지 제4호 서식】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우수임산물 포장·운송비(2004. /4분기) -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전화 :		FAX :	
주소				
대표자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직위	성명

### 2. 지원 신청내역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기간	포장운송비(원/kg)		
	물량(kg)	금액(\$)		포장재	운송비	계

위와 같이 우수임산물 포장·운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4. . . .

신청인 : (인)

- 붙임 : 1. 일자별(수출신고건별)수출내역 1부  
2. 포장재 제작사양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포장디자인 개발비 -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 2. 지원 신청내역

개발품목	수출지역	개발유형	포장형태	포장표기언어	소요액(원)

※ 개발유형 : 캐릭터 개발, 용기형태 개발 등으로 구분 기재  
포장형태 : 내포장, 외포장, 중량별 포장 등으로 구분 기재

위와 같이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4. . . .

신청인 : (인)

- 붙임 : 1. 디자인개발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업체, 디자인개발업체)  
3.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서(수출증빙서류포함)1부 (붙임).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분재표찰 제작비 -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 2. 지원 신청내역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생산)계획		소요액(원)
	물량(본)	금액(\$)	물량(본)	금액(\$)	

위와 같이 분재표찰 제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4. .

신청인 : (인)

-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출실적 및 수출(생산)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1).  
3. 분재수출 양묘장 등록증(국립식물검역소)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수출임산물 기계장비, 운송차량 구입비 -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 2. 지원 신청내역

사 업 별	장비명	규 격	제작회사	수 량	단 가	소요액(원)
- 수출임산물 기계장비						
- 운송차량						

위와 같이 수출임산물기계장비, 운송차량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4. . . .

신청인 : (인)

- 붙임 : 1. 견적서(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수출 임산물 식품안전성 확보 -

### 1. 신청인 현황

업체(단체)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 2. 지원 신청내역

사 업 별	품 목	국가명	규 격	수 량	단 가	소요액(원)
생산이력서 제작비						
수출임산물 안전성 홍보						

위와 같이 수출 임산물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4. . . .

신청인 : (인)

- 붙임 : 1. 견적서(생산이력서 및 홍보물 제작)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우수임산물 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 시장개척단 파견 -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전화 :	FAX :	
주소				
대표자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직위	성명

### 2. 지원 신청내역

참가자 성명	(국문)	(영문)
참가 신청지역	유럽( ), 일본( ), 미국( ), 기타( )	
참가품목	(국문)	(영문)
	(한문)	(독문)
참가 희망시기	2004. . . ~ . . .	
통역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위와 같이 임산물 시장개척단 참가를 신청합니다.

2004. . . .

신청인 : (인)

-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2.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 2. 지원 신청내역

(단위 : m<sup>3</sup>, 백만원)

사업량	단가(원/m <sup>3</sup> )	구입비 재원			사업장 소재지
		계	용자	자부담	

위와 같이 수출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4. . . .

신청인 : (인)

-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1>

##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m<sup>3</sup>, 천\$)

연도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002								
2003								

###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m<sup>3</sup>,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3. 수출신용장 수취현황

(단위 : 톤·m<sup>3</sup>, 천\$)

품목 (HS번호)	신용장 내용					수출국
	개설일자	개설금액	개설수량	결제조건	선적기한	

② 목재유통 지원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이용과(과장 최수천, 행정사무관 민한기)입니다.

1. 목 적

- 국산재를 수집·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국산재 활용촉진 및 목재자급을 제고와 산주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국산재 이용·가공 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수입재와의 경쟁력 제고
- 국산재(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으로 국산재 활용촉진 및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재정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1) 임산물종합유통센터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2006년
사업량(개소)		1	2	2	2	2
사업비	계	46,360	6,607	5,365	4,668	9,310
	보 조	28,510	4,683	2,865	1,543	3,060
	용 자	11,612	1,539	2,000	2,500	5,000
	자부담	6,238	385	500	625	1,250

(2) 목재집하장

(단위 : 백만원)

구 분		'88~'00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5년이후
사업량(개소)		17	1	2	4	12
사업비	계	7,794	860	1,360	3,200	9,600
	보 조	4,010	344	544	1,280	3,840
	지방비	804	258	408	960	2,880
	자부담	2,980	258	408	960	2,880

## 5. 2004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배 경
  - 여주임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활성화 및 국산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원료구입비, 가공시설보완, 운영비지원
- 지원대상 :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비율
  - 가공시설 보완 및 운영비 지원 : 국고보조 100%
  - 여주·동해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원료구입 : 용자 80%, 자부담 20%

##### (2) 목재집하장

- 배 경
  - 현재 운영중인 목재집하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성 향상 및 국산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보완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림조합(목재집하장)
- 지원비율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나. 2004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6,078	4,587	2,087	2,500	408	1,083
○ 임산물종합유통센터		4,718	4,043	1,543	2,500	-	675
- 여주센터 운영지원	1개소	800	800	800	-	-	-
- 여주센터 시설보완	6식	743	743	743	-	-	-
- 여주·동해 원료구입	22,184m <sup>3</sup>	3,175	2,500		2,500	-	675
○ 목재집하장	2개소	1,360	544	544	-	408	408
- 제주남부조합 시설보완	1개소	860	344	344	-	258	258
- 남원조합 시설보완	1개소	500	200	200	-	150	150

## <추진체계>

### 가. 임산물종합유통센터

(1) 사업주관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2) 사업담당 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목재이용과(042-481-4131~2)
- 산림조합중앙회 : 임산유통부(02-3434-7184~5)

(3) 자금지원 예정자 : 임산물종합유통센터

(4)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여주임산물종합유통센터 원료구입·가공시설 보완·운영지원비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추진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융자금 포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나) 사업비 집행방법

- 자금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집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집행함

(5)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 나. 목재집하장

(1) 사업주관 기관 : 시·군

(2) 사업담당 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목재이용과(042-481-4131~2)
- 시·도(시·군) : 산림관련 부서



(3) 자금지원 예정자 : 산림조합(목재집하장)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나)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대상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추진
- 시장군수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자금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집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집행함.

(5)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 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가. 임산물종합유통센터

(1)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
- 본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고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 준용

(2) 보고·기타

- 보조사업자는 유통센터 운영실적을 평가·분석하여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보고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실행 년도 12월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나. 목재집하장

(1)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

(2)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6. 2005년도 사업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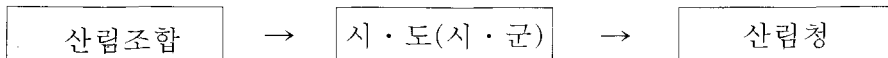
-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산림조합중앙회
- 목재집하장 : 시·군 산림관련 부서

나. 신청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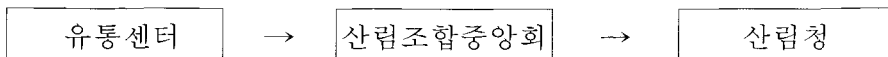
-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여주, 동해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목재집하장 : 목재집하장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조합

다. 신청절차

-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목재집하장



### ③ 임산물 생산자조직육성

#### 1. 목 적

-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고 임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의 근대화 촉진
- 임산물 생산자의 조직화·내실화 유도 및 우수조직 집중지원으로 생산자 조직을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7조(기금의 운용)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2006년
사업량(개소)	-	-	-	-	-	-
사 업 비	계	244,967	63,087	63,087	63,087	147,900
	용 자	195,973	50,470	50,470	50,470	119,330
	자부담	48,994	12,617	12,617	12,617	28,570

※ '92~'99년은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 출하조절사업 및 임산물생산자단체 회원조합 육성사업으로 지원한 내역임.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 배 경

- '98까지는 규격출하 촉진자금지원, 생산자 유통지원사업 및 품목별 생산자 조직육성지원 실시를 통해 산지유통개선을 도모
- '99년부터는 각종 산지유통관련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주산지 중심의 전략 품목에 대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성 제고

##### ○ 지원대상자 : 임산물생산자단체(법인경영체)

##### ○ 지원비율 : 국고용자 80%, 자부담 20%

##### ○ 용자조건

- 금 리 : 연리 4%
- 기 간 : 1년이내

##### ○ 용자한도액 : 2,000백만원이내

##### ○ 용자단가 :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 지원종류 : 밤, 표고, 대추,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 수매·출하조절

####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 임산물생산자단체 육성사업	-	63,087	50,470	-	50,470	-	12,617

※ 용자조건 : 연리 4%, 1년이내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042-481-4195~6)
- 산림조합
  - 중앙회 : 임산유통부(02-3434-7184~5)
  - 도지회 : 관리과(지도검사과)
  - 시·군 산림조합 : 금융과(지도과)
- 농업협동조합
  - 중앙회 : 과수화훼과(02-397-6555)
  - 도지회 : 유통가공과 (지도검사과)
  - 시·군(읍·면) 농업협동조합 지도판매과 및 농업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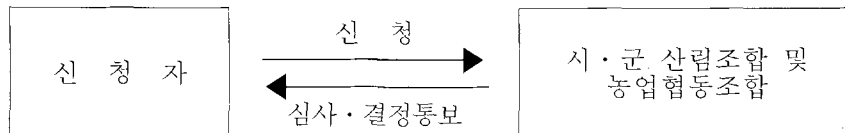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

-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 (2)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임산물 생산자조직(법인경영체)
- (3)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는 법인
- (4)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5) 신청시기 : 2004. 1. 1 ~ 1. 20

(6)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7) 구비서류 : 임산물생산자단체육성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8)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평가결과 최상위 조직으로 평가된 법인경영체
- ② 임산물표준출하규격에 따른 공동출하 실적이 우수한 법인경영체
- ③ 주산단지내 회원이 다수인 법인경영체
- ④ 유통시설 및 장비구입사업을 희망하는 법인경영체
- ⑤ 기타 법인경영체

(9) 사업시행요령

- 법인경영체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4.1.20까지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에 제출

-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 법인경영체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2004.2.10까지 산조중앙회(도지회) 및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제출
- 산조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 법인경영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종합정리하여 품목별·사업종류별·지원예정 법인경영체별·지원예정시기별 내역을 작성하여 2004.2월말까지 산림청에 제출하고 지원예정자에게 통보
- 산림청 : 지원예정시기별 자금배정을 농림부에 요청하고 산조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 융자금 사후관리
- 산조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 법인경영체별 사업추진 현황 및 융자금 사후관리

### 나. 보고·기타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49-1)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담보물이 부족한 법인경영체에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법인경영체의 회원명의로 대출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금은 법인경영체의 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며 대출기관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산조중앙회장 및 농협중앙회장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융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인센티브 부여 및 감액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단, 신청시기는 2004.1.1~1.20까지임
- 기타 사항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 임산물 생산자단체육성 사업신청서

### 1. 조직현황

법인경영체명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립일자			설립법적근거			
조합원수			출자금액	천원		
시설현황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수송차량			기타
	m <sup>2</sup>	m <sup>2</sup>	대			
재배현황	구분	품목				
	면적(ha,m <sup>2</sup> )					
		생산량(톤)				
기타특기사항	공동출하실적 :		톤			

### 2.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사업비			사업소재지
			계	용자	자부담	

2004.

신청인    법인경영체명  
          성명(대표자)

(인)

○○산림조합장            귀하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 ④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 1. 목 적

- 밤, 표고, 송이, 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 저장상품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로 가격안정과 생산자 소득증대 도모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출하 방지 및 가격안정 도모
- 지원규모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활용도가 극대화 되도록 조절 시설
- 부지구입은 자부담으로 하되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음.

###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재정지원) 및 제8조(유통구조개선)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2006년	
사업량(개소)	128	48	66	66	66	120	
사 업 비	계	37,301	12,625	18,025	18,025	18,025	36,000
	보 조	6,707	2,525	3,605	3,605	3,605	7,200
	용 자	10,602	2,525	3,605	3,605	3,605	7,200
	지방비	5,635	2,525	3,605	3,605	3,605	7,200
자부담	14,357	5,050	7,210	7,210	7,210	14,400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 경
  - 단기소득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93년부터 저장시설비 지원
  - 꽃감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1년도부터 건조시설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지원단가
  - 임산물 저장시설 : 개소당 300백만원(250m<sup>2</sup>)을 기준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 건조시설 : 개소당 122.5백만원 기준
- 지원내용 :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시설 및 장비 등
  - ※ 부지구입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동식의 경우 건축비 대신 컨테이너 구입 등으로 대체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용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용자조건 : 연리 4%(3년거치 7년상환)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66개소	18,025	7,210	3,605	3,605	3,605	7,210
○ 저장시설	56	16,800	6,720	3,360	3,360	3,360	6,720
○ 건조시설	10	1,225	490	245	245	245	49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저장시설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042-481-4195~6)
  - 건조시설 : " (042-481-4195~6)
- 시·도 : 산림과 (산림녹지과, 산지이용과, 산림환경과) 등 산림담당부서
- 시·군 : 산림과(녹지과) 등 산림담당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시·군에서 선정

## 라. 사업시행

###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 능력 및 경영능력

###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권자 : 시장·군수

### ○ 사업비 집행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서 융자 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 시·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도방문 및 감독 실시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및 용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 산림조합 : 용자금 사후관리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 고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 공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

### 나. 보 고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용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 49-1)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동)

나. 신청자격 :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1)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업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 소득임산물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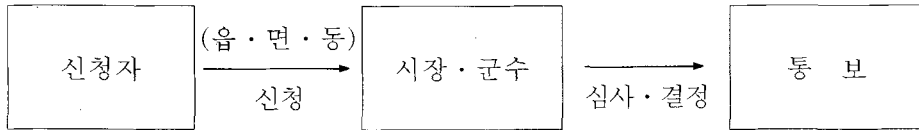
(2)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주산단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주산단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③ 기타 지역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④ 기타 지역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⑤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단체 또는 법인경영체

바. 기타 사항

-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함.

# Ⅲ. 인력육성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지원과(과장 이경일, 행정사무관 김영철)입니다.

## 1. 목 적

- 독립가·임업후계자 및 신지식임업인의 지속적인 발굴 및 육성지원을 통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의 지속적인 선발
- 소유산림의 자율적 경영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임업후계자등의 육성) 동법시행령 제10조(독립가에 대한 지원) 동법시행규칙 제13조(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산림법 제109조(자금지원)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이후
사 업 량	1,249명	170명	152명	120명	591명
	85,200	14,200	15,200	12,000	59,100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 경

임업경영기반을 갖추고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독립가와 젊고 유능한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임업인에게 임업경영자금을 집중지원함으로써 사유림경영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2) 지원대상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임업후계자 선발·독립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임업후계자, 독립가로 선발된 자
-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3) 지원조건

- 용자한도액 : 독립가 3억원, 임업후계자 2억원, 신지식임업인 1억원
- 용자조건 : 연 3%, 장기수사업 20년거치 15년 상환, 기타사업 5년거치 10년 상환, 임대시설 10년거치 10년 상환, 자연휴양림 조성 10년거치 10년 상환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 (4) 지원내용

-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산림사업비, 산림용기자재구입비, 임야매입자금, 임대시설 및 보수, 자연휴양림 조성 등

####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명)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독립가· 임업후계자등	120	12,000	12,000		12,00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립 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 (042-481-4211~3)
- 시 · 도 : 산림관련부서, 산림조합중앙회 및 각 도지회
- 시·군·자치구 : 산림관련부서, 산림조합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임업및산촌진흥에관한촉진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임업후계자선발·독립가선정절차 및관리에관한규정」 제2조 제6조 규정에 따라 독립가·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사업시행계획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작성하여 산림조합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변경 : 독립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장에게 변경승인 요청
- 사업비 집행방법
  - 산림조합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 대출금은 지원 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산림조합장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규정에 의거 지원
  - 산림조합장은 대출과 동시 관할 시장·군수에게 대출상황을 통보
- 추진일정
  - 자금신청 : 1월~12월
  - 자금대출 : 1월~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산림조합장은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융자금이 부당사용 등 사유가 발생시는 당해 융자금 회수
- 임야매입가격이 평당(3.3058㎡) 10,000원 이상인 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물자 등을 보관
- 임야매입은 관인매매 계약서상 금액의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이전등기후 취득세 납부영수증에 의한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액 대출

## 바. 기타사항

- 장기수사업의 범위
  - 장기수 조림·육림사업에 소요된 인건비
  - 장기수 조림·육림 용으로 임야를 매입하는 경우
- 임야매입의 경우
  - 산림법 제16조제1항제1호 보전임지 중 생산임지(필지별 지적의 90% 이상 면적이 생산임지일 경우)에 한함.
  - 직계존비속간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임야 매입은 관인매매 계약서상 금액의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이전 등기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에 의한 매입자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액대출
- 용자단비중 관리인 1인당 관리 기준
  - 산림사업 : 연면적 100ha(실제 사업실행기간에 한함)
    - 산림사업 연면적은 조림, 풀베기, 비료주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병해충방제 등 연간 산림사업 총 면적
  - 산불감시원 : 100ha(단 6개월 이내)
  - 임도유지관리 : 연장 10km(단 2개월 이내)
  - 휴양림관리 : 1개소(년중)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 표고재배 : 200m<sup>2</sup>(년중)
    - 밤나무관리 : 10ha(6개월이내)
  - 기타사업에 필요한 관리인은 용자취급기관에서 현지실정에 맞게 적용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산림조합장은 대출사항등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지원사항등을 독립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 대출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 산림조합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목적이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 시장·군수는 관할 시·군 산림조합장과 협조하여 독립가·임업후계자 및 신지식임업인에게 정부 산림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산림경영기술지도를 강화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관리 : 해당사항 없음.

### 나. 보고·기타

- 산림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장)은 지원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총민 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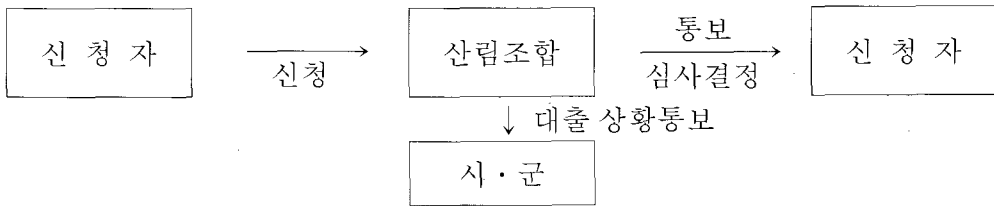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조합

나. 신청자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제9조 「임업후계자선발·독립가선정절차 및관리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독립가·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및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로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산림사업용 기자재구입비, 임야매입자금, 임대시설 또는 보수, 자연휴양림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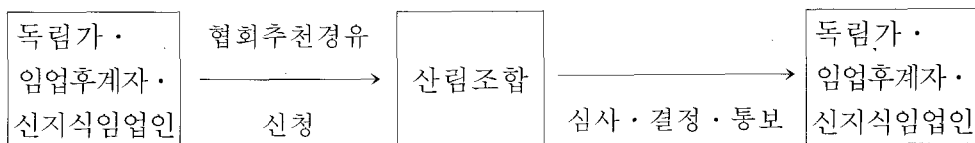
-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제9조제1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제9조제4항 관련 별지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임업후계자선발·독립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독립가로 선발된 자 및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신청절차 (자금용자)

- 독립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가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산림조합에 신청하면 현지확인 후 종합 심사하여 선정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산림조합장 : 임업기술지도원을 지도·감독
- 산림조합중앙회장 : 지도원의 채용·임용 및 임업기술지도원 교육
- 산림청장 : 임업기술지도원의 직무 및 배치기준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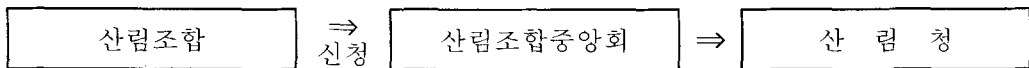
### 나. 보고·기타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004.12.31까지 보조사업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보고(총공통-9)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및 신청자격 : 산림조합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장

### 나. 신청절차



다.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① 임업전문인력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과장 김상균, 임업사무관 황옥성)입니다.

## 1. 목 적

- 농산촌 인력난에 따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장 임업전문기술인력 양성
- 임업기능인영립단 운영으로 임업의 산업화 도모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업기능인 및 전문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영립단 장비지원
  - 임업경영에 관한 기본이론 및 현장 산림사업기술 교육훈련
  - 임업기계화를 위한 임업기계장비의 조작·정비훈련
  - 목구조기술훈련 및 산림내 소득작물재배 기술교육으로 농외소득증대
  - 임업기계훈련원 교육장비 보강 및 산림경영관리자 교육 내실화

##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기금의 용도)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 4. 연도별 지원계획

○ 전문인력 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2007년
사 업 량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사업비	계	11,574	2,868	3,050	1,918	5,754
	보 조	11,574	2,868	3,050	1,918	5,754

○ 영림단 장비지원

(단위: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2007년
사 업 량		293단 (3,516명)	30단 (360명)	30단 (360명)	30단 (360명)	90단 (1,080명)
사업비	계	5,886	566	581	581	1,743
	보 조	5,886	566	581	581	1,743

#### 5. 2004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전문인력양성 지원

○ 추진 배경

- 농산촌 인력난이 심해짐에 따라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어 산림작업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훈련사업 실시
- 산림경영계획,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을 담당할 산림경영관리자의 육성

○ 지원내용

- 3개 임업기능인훈련원의 임업기능인 및 산림경영관리자 교육훈련비 지원
- 교육훈련에 필요한 임업기계 장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임업기능인 양성 임업훈련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3개 임업훈련원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양산 임업기술훈련원, 진안 임업기능인훈련원)
  - 산림경영관리자 양성 임업훈련기관 :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 임업기능인영립단 장비지원

- 배경 : 농산촌 인력난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임업노동력 확보
- 사업시행주체 : 산림조합중앙회, 시·군 산림조합
- 지원대상자 : 임업기능인영립단
- 사업내용
  -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립단에게 사업실행시 필요한 장비구입비 지원
  - 사업량 : ('02) 472단 5,605명 → (2007) 850단 10,000명
  - 장비지원내용 : 1단당 12명 기준

기계톱	풀깎기	고지절단기	천공기	원 치	차량	무육도구	안전장비
6대	2대	4대	2대	1대	1대	12조	12조

(3) 교육대상자 선정

- 산림경영관리자 양성
  - 대상자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및 정규대학 3년이상 수료자중 임업관련학과 출신자
    - 숲가꾸기 교육 2주이상 및 영립단 교육 이수증인자로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임업관련 자격증 소지자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선정방법 : 관련기관 또는 학과장 추천자 및 임업관련학과 출신자 우선 선발
- 임업기능인양성
  - 대상자
    - 18세 이상으로 각종 산림작업을 담당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
    - 관할지역 산촌거주자로서 산림작업에 종사할 의욕이 강한 자
    - 산림작업에 경험이 있는 자

- 선정방법

-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에서 기능인영림단 양성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일반인이라도 지역임협 및 임업훈련원에 기능인교육을 희망하면 훈련원의 교육인원, 교육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나. 2004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 전문인력 양성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용자		
계		3개소	1,918	1,918	1,918	-	-	
임업 훈련원	인건비		854	854	854	-	-	
	경상비및훈련사업비		789	789	789	-	-	
	교육장비구입, 시설비		275	275	275	-	-	

○ 영림단 장비지원

(단위: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합계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예산액(일반회계)					
			계	용자	보조			
계	30단	565	565	-	565	-		
민유림 영림단 증 설	30단	565	565	-	5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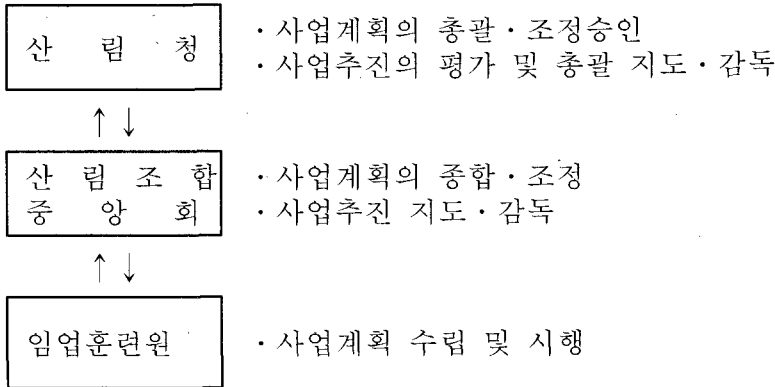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국유림관리국 국유림경영과 (042-481-4206)

다. 사업시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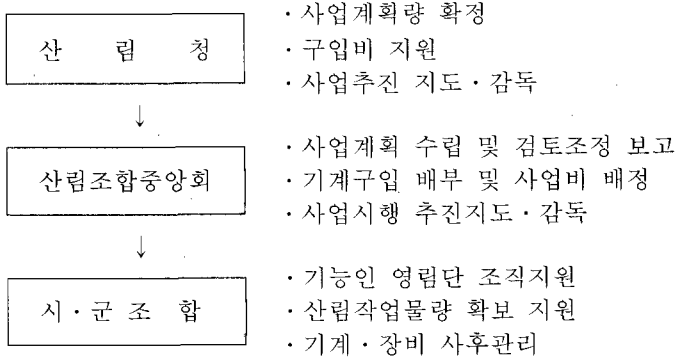
(1) 전문인력양성



(2) 영림단 장비지원

○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수행주체 : 시·군 산림조합
- 사업 추진



- 지원형태 및 수준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기준 : 국고 100%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각 임업훈련원의 2004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3 11. 30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 사업비 지원방법

훈련사업비 지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장에 보조금으로 교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각 임업훈련원의 훈련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각 임업훈련원은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영림단 교육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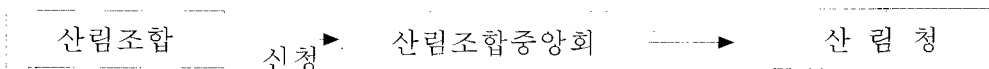
### 나. 보 고

- 보조금 정산보고(총공통-9)

## 6. 2005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004. 3.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 나. 신청절차



다.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관련 별지제3호서식)

## ② 임업기술지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지원과 (과장 이경일, 행정사무관 김영철) 입니다.

### 1. 목 적

- 선진 임업기술·정보의 보급과 현장위주 실질적인 임업기술지도 실시로 사유림의 자원화와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 '78년부터 임업기술지도원 배치·국고지원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업기술지도원 인건비의 단계적 현실화
- 산림지발간·보급, 현장위주의 임업기술지도로 대국민 홍보 및 산주의 경영의식 고취
- 기술지도실적이 우수한 산림조합에 장비 및 기자재를 인센티브 지원하여 임업기술지도의 활성화
- 사유림의 경영을 위한 대리경영 지속 추진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조(임업기술지도등), 동법시행령 제13조(임업기술지도원의 직무 및 배치)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년 이후
사업 량	기술지도원(명)	787	787	803	880	1,277
	지도장비(대)	423 (짚차)	30 (짚차)	207 (노트북)	2종	5종
계		90,078	11,630	13,256	11,630	70,069
사 업 비	보 조	50,078	6,556	7,910	9,261	55,690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39,259	5,074	5,346	2,369	14,379

## 5. 2004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 배 경

- 국내외 선진 임업기술·지식·정보를 보급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산주가 직접 산림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산림에 대한 대리경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임업기술지도원의 지도능력 향상

##### ○ 지원대상

- 임업기술지도원(조합당 6~7명, 총 880명 배치)  
\* 임업기술지도원(803명), 협업경영지도원을(77명)
- 임업기술지도 장비 및 기자재  
\* 기술지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조합에 장비 및 기자재를 인센티브로 지원
- 임업기술정보지(산림지)

##### ○ 지원비율

- 임업기술지도원 인건비 : 국고 80%, 자부담 20%
- 지도장비 및 기자재(인센티브) : 국고 100%
- 산림지 : 국고 50%, 자부담 50%

####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1,630	9,261	9,261	-	-	2,369
기술지도원	880명	11,154	8,923	8,923	-	-	2,231
지도장비·기자재	2종	200	200	200	-	-	-
산림지	276천부	276	138	138	-	-	138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042-481-4211~3)
- 산림조합중앙회 : 회원지원부(02-3434-7204~6)
- 시·군 산림조합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조합은 대리경영 계약목표, 대산주 기술지도계획 등이 포함된 기술지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중앙회에 제출
  - 중앙회는 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조합별 지원계획을 수립, 산림청장에게 제출
  - 산림청은 중앙회장이 제출한 기술지도사업 지원계획을 검토하여 자금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자금지원 요청시 교부결정
- 사업비 집행방법 :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집행
- 추진일정
  -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 1월~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산조중앙회는 보조금을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되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 회수조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치
- 산조중앙회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정산
  - 기술지도원 급여의 일부분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종료 1월전에 대리경영 계약실적, 대산주 기술지도활동 등 실질적인 임업기술 지도실적을 종합하여 지원(성과주의)하고, 정산시 이를 보고함
- 산조중앙회는 인건비 및 기자재·장비 등의 인센티브제 실시를 위한 평가계획서를 사전에 산림청과 협의한 후 하반기에 점검 및 평가실시

여 백



## IV. 산림복지 기능증진

여 백

## 64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박물관 등 조성 (공공)

### ① 산림휴양공간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문화과(과장 김용하, 임업사무관 김태경)입니다.

#### 1. 목 적

-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산림 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산림내 다양한 휴양공간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도모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주5일 근무제 실시로 급증할 산림휴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
- 일반국민이 즐겨 찾는 이용자 중심의 산림휴양시설 확충
- 권역별 수요를 감안한 산림휴양권역간 균형 발전 유도
-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간 확충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31조~제33조, 자연휴양림조성·관리및운영요령(산림청예규 제489호)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년 이후
사 업 량		104	9	14	16	87
사 업 비	계	130,715	10,560	12,222	17,177	66,267
	보 조	48,256	5,884	6,835	9,224	38,187
	용 자	14,756	420	420	-	2,520
	지방비	61,379	4,076	4,787	7,953	24,480
	자부담	6,324	180	180	-	1,080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 배 경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산림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함.

##### ○ 지원대상자

- 공유림 국고보조(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 시·도, 시·군
- 사유휴양림 보조 : 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중인 자
- 사유휴양림 용자 : 지정·고시된 사유림중 시·도지사로부터 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 지원단가 및 조건

- 공유휴양림 조성 : 개소당 12억원을 2년간 분할 지원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공유휴양림 보완 : 개소당 4억원을 당해연도에 지원  
(국고보조 30~50% 지방비 50~70%)
- 사유휴양림 용자 : 12억원을 기준 설계금액의 70%까지 2년간 분할 지원  
(10년거치 10년상환 연리 3.0%)
  - 용자방법 : 사업실행 전 사업계획 공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고 사후에 사업실적을 확인
- 사유휴양림 보조 : 휴양림 운영상태에 따라 조정 지원
-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조성 : 개소 당 4억원을 당해연도에 지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 시설종류

- 자연휴양림 : 산책로, 야영장, 등산로, 숲속의집, 취사장, 화장실 등
- 산림욕장 : 주차장, 전망대, 벤취, 자연관찰원,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 등
- 숲속수련장 : 단체숙소, 강의실, 회의장, 산림을 이용한 학습·심신단련 시설 등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금액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 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51	18,577	9,924	9,924	-	7,953	700
· 공유휴양림 조성	37	17,177	9,224	9,224	-	7,953	-
- 신규 설 계	4	177	124	124	-	53	-
- 신규 조 성	6	3,600	2,520	2,520	-	1,080	-
- 계 속 사 업	4	2,400	1,680	1,680	-	720	-
- 보 완 사 업	13	7,000	2,900	2,900	-	4,100	-
- 숲속수련장조성	1	400	200	200	-	200	-
- 산림욕장조성	9	3,600	1,800	1,800	-	1,800	-
· 사유휴양림 보조	14	1,400	700	700	-	-	7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시·도, 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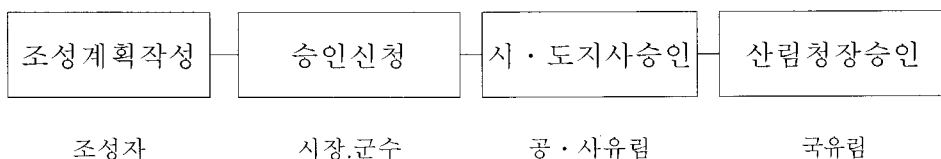
- 산림청 : 국유림관리국 산림문화과(042-481-4247~4249)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시·도, 시·군 및 개인휴양림 조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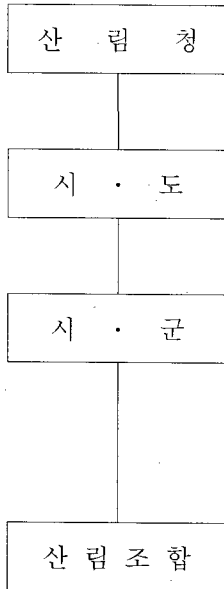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자연휴양림(용자)



- 사업계획의 총괄조정
- 사업추진의 총괄 지도·감독
-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 사업시행추진 지도·감독
- 사업계획수립 및 적격사업자 선정
-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자의 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산림조합에 지원대상자 지원액 및 사업계획서 통보
- 사업비 정산
- 용자지원 및 사업추진 지도·감독, 사후관리
- 시장·군수에게 용자실적 통보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보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관할 산림조합장
- 조성시설 추진상황 점검
- 시설운영 여부 확인

나. 보고·기타

- 국고보조금 정산실적보고 (총공통-9)
- 사유휴양림 용자실적보고 (시·군→시·도→산림청)

## 6. 2005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등의 사업부서

나. 신청자격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자연휴양림

<신규조성>

-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산림으로서 배후도시의 휴양수요, 인근 산촌마을 소득향상, 기타 지역 개발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

<보완사업>

-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대비 숙박시설 확충 위주로 실시하되 휴양림별 집중 시설보완 방식으로 추진

○ 사유림 자연휴양림

<용자사업>

-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사유림중 시·도지사로부터 휴양림 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자로서 자부담 및 담보능력 유무에 따라 선정 지원

<보조사업>

- 산림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조성 운영하고 있는 사유휴양림 중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휴양림 지원

○ 산림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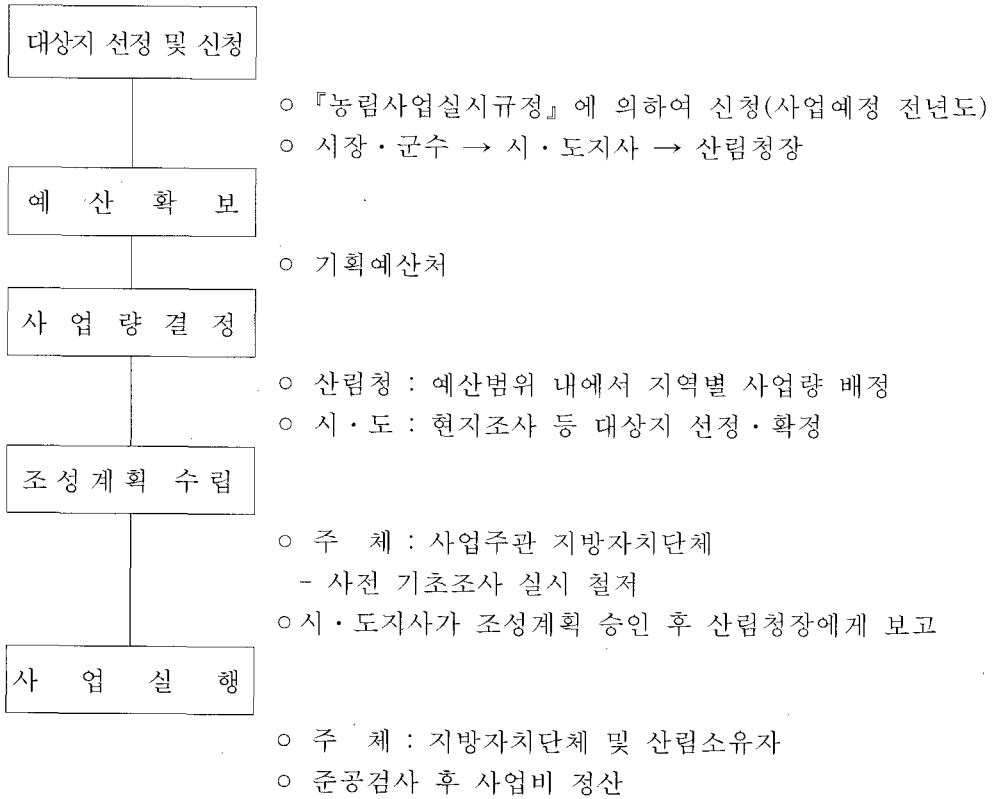
- 도시근교에 위치하여 당일 방문이 가능한 5ha 이상의 공유림으로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곳

○ 숲속수련장

- 운영중인 공유림 휴양림 중 청소년의 심신순화 및 심신수련의 장소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

다. 신청절차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마. 지원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 및 사업추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선정



## ②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보호과(과장 김현수, 임업 사무관 김영환)입니다.

### 1. 목 적

-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전시로 국민의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술연구의 장 제공
-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수집·증식·관리로 현지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식물자원의 산업화·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
- 자생식물식재사업을 통한 지역별 고유경관 회복 및 국민의 정서 순화와 우리꽃에 대한 이용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 및 전시를 통한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 식물유전자원의 현지의 보전기능 강화 및 자원화를 위한 산업적·학술적 연구
- 자생식물산업의 산업화 촉진 및 국민의 정서 순화

### 3. 근거법령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22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2007년
사 업 량		16/137	16/61	14/55	21/55	20/292
○ 산림박물관(개소)		5	4	3	4	3
○ 공립수목원(개소)		11	12	11	17	17
○ 자생식물식재(km)		137	61	55	55	292
사 업 비	계	124,252	27,307	26,049	26,524	88,838
	- 보 조	59,784	13,654	13,025	13,412	44,419
	- 용 자	-	-	-	-	-
	- 지 방 비	64,468	13,653	13,024	13,112	44,419
	- 자 부 담	-	-	-	-	-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 배 경

- 산림사료와 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산림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자연학습장 제공

##### ○ 지원대상

- 시·도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과 자생식물을 식재코자 하는자

##### ○ 지원조건

- 산림박물관, 수목원, 자생식물식재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 사업내용

- 산림박물관 : 전시장 및 내부전시물, 기타 각종 부대시설 등
- 공립수목원 : 전시원, 온실, 연구시설, 교육동, 관리사, 관찰로 등
- 자생식물식재 : 주요국도·지방도·고속도로변·문화관광지 주변 및 국제적 행사 개최도시에 화훼·조경가치가 높은 지방 고유의 향토자생식물로 조성

####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일반)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21/55	26,426	13,414	13,414	-	13,012	-
○ 산림박물관	4	5,152	2,576	2,576	-	2,576	-
- 설 계	1	-	-	-	-	-	-
- 조 성	2	4,152	2,076	2,076	-	2,076	-
- 보 완	1	1,000	500	500	-	500	-
○ 공립수목원	17	17,345	8,873	8,873	-	8,472	-
- 설 계	1	245	123	123	-	122	-
- 조 성	4	7,500	3,950	3,950	-	3,550	-
- 보 완	12	9,600	4,800	4,800	-	4,800	-
○ 자생식물식재	55km	3,929	1,965	1,965	-	1,964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지방산림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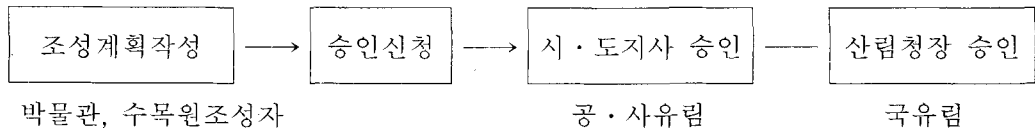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국유림관리국 산림보호과(042-481-4261~2)
- 시·도 : 산림(녹지)관련과
- 지방산림관리청 : 산림경영과, 경영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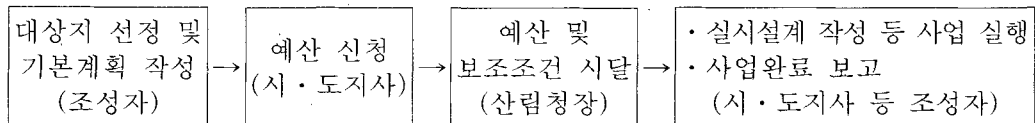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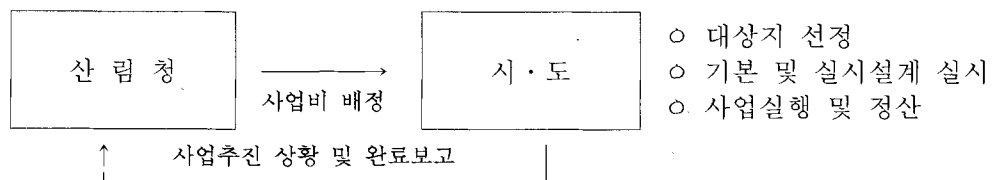
###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조성>



### <자생식물식재사업>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
- 사후관리 철저 : 조성시설 추진상황 점검

나. 보고·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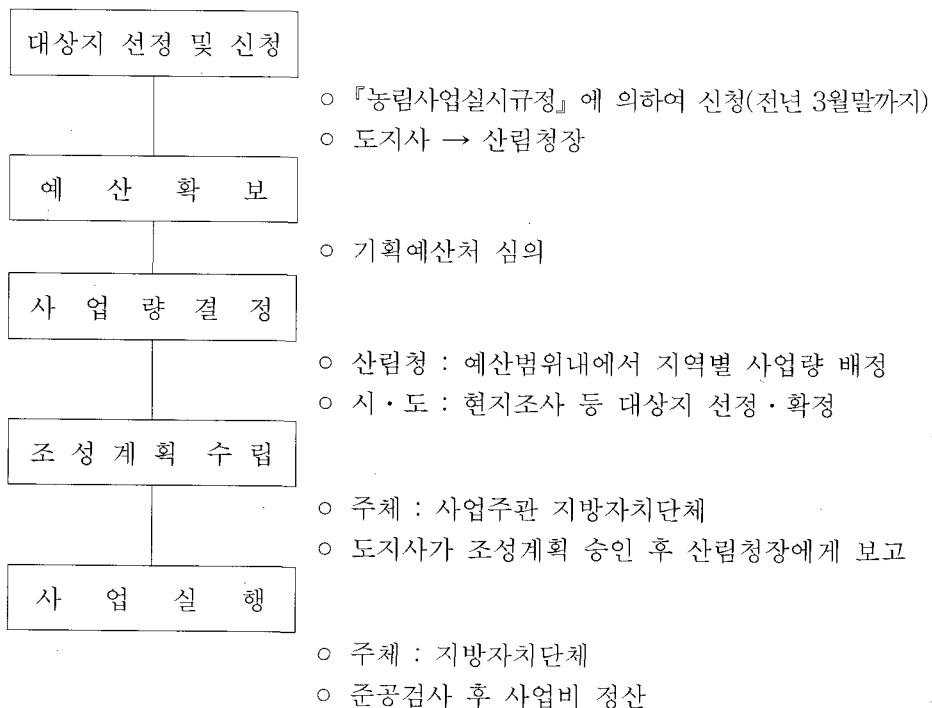
- 국고보조금 정산실적보고(총공통-9)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가. 사업대상지 선정

- 산림박물관 : 수목원내의 부대시설로서 적정 규모로 조성
- 공립수목원 :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향토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을 선정
- 자생식물식재 : 시·군·구별로 주요국도·지방도·고속도로변·문화관광지 주변 및 국제적 행사 개최도시에 화훼·조경가치가 높은 지방고유의 향토자생식물로 조성

### 나. 신청절차



### ③ 생태숲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보호과(과장 김현수, 임업사무관 김영환)입니다.

#### 1. 목 적

- 자생식물자원의 현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인위적 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
-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숲 복원기법 개발 및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민의 자연 학습 및 산림문화 공간으로 제공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산림생태계 연구의 전진기지 확충
- 희귀·특산식물 및 유용한 자생식물자원으로 자연생태계의 천이학습 모델로 조성하고 생태계의 교란 방지를 위하여 외래수종은 유입 금지
- 생태원리에 입각하여 인공 시설물의 최소화 및 자연림의 원식생(原植生) 복원으로 산림생태 질서가 스스로 유지되도록 조성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2

#### 4. 조성 목표 : 시·도별 2개소 이상의 특화된 생태숲 조성

- 단기 목표 : 2007년까지 12개소 조성
- 최종 목표 : 2015년까지 32개소 조성

#### 5. 연도별 지원계획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2007년
○ 생태숲조성		2	6	9	12	12
사 업 비	계	3,267	2,723	5,429	10,102	43,510
	- 보 조	2,052	1,522	2,875	5,411	21,556
	- 용 자	-	-	-	-	-
	- 지 방 비	1,215	1,201	2,554	4,691	21,954
	- 자 부 담	-	-	-	-	-

※사업량 개소수는 누계 수치임

## 6.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 배 경

- 생명공학(BT) 및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세계는 자국의 식물자원에 대한 보전, 확보, 이용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
- 특히, 생물다양성협약('92. 6월) 발효이후 선진국들은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주장과 유출방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
- 이에 따라 희귀·특산식물 등 유용한 자생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생태숲)을 조성함으로써, 자생식물의 체계적인 보전 및 이력 자원화하기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코자 함.

##### ○ 지원대상 : 시, 도 및 시·군·구의 생태숲을 조성코자 하는 자

##### ○ 개소별 사업기간 : 6년(1년 설계, 5년 시공)

##### ○ 개소별 총 사업비 : 50억 규모

##### ○ 지원형태 및 조건 : 자치단체 자본보조,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 자금사용 : 부지매입비 및 타 용도와 인공시설 기준이상 사용금지

- 생태숲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본 지침상의 추진방향 및 주요 시설과 성격이 상이한 용도의 시설에는 자금사용 금지
- 인공시설물 시설기준 : 관리자, 연구동 등 각종 건축물의 시설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 사업내용

- 유용식물원, 시험전시림, 특산식물소원 등 지역별 상징숲 조성
-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생태계복원기법 개발 등을 위한 연구시설
- 해안, 계곡, 고산습지, 동굴생태 등 식생여건에 따른 생태관찰원
- 탐방로, 관리자, 증식·재배온실, 시험양묘포지 연구기반 시설 등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일반)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생태숲 조성	12개소	10,102	5,411	5,411	-	4,691	-
- 설 계	2	416	208	208	-	208	-
- 조 성	10	9,686	5,203	5,203	-	4,483	-
- 보 완	-	-	-	-	-	-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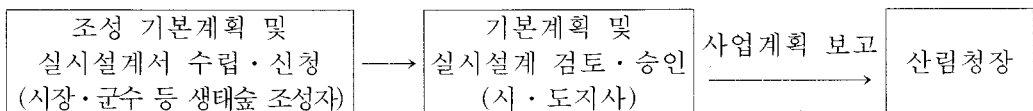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국유림관리국 산림보호과(042-481-4261~2)
- 시·도 : 산림(녹지)관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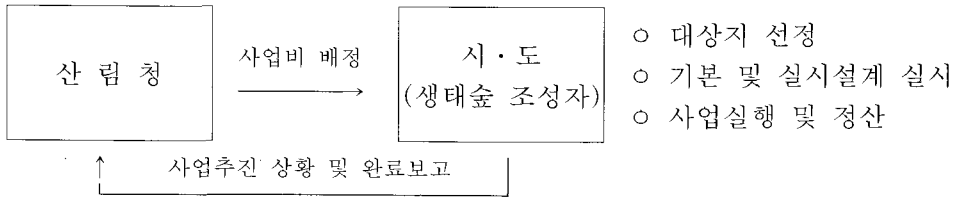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함
- 대상지 및 규모 : 공유림에 한하여 일단의 산림면적이 50ha이상  
  - ※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수익권이 확보된 사유림도 가능
- 대상지 선정자 : 현지조사 및 사업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선정 결정
- 대상지 선정 유형
  - 대상지내 특이한 소생물권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이의 서식처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 대상지내 교목류, 관목류,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500종류(중, 아종, 변종 및 품종을 말한다)이상의 식물종수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
  - 역사성·문화성의 보존과 전통적 생물자원의 원식생 복원으로 생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지역 등 지역별, 기후대별, 식생천이별 등 특성화가 가능한 지역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대상지 선정
-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 사업실행 및 정산

<행정사항>

가. 사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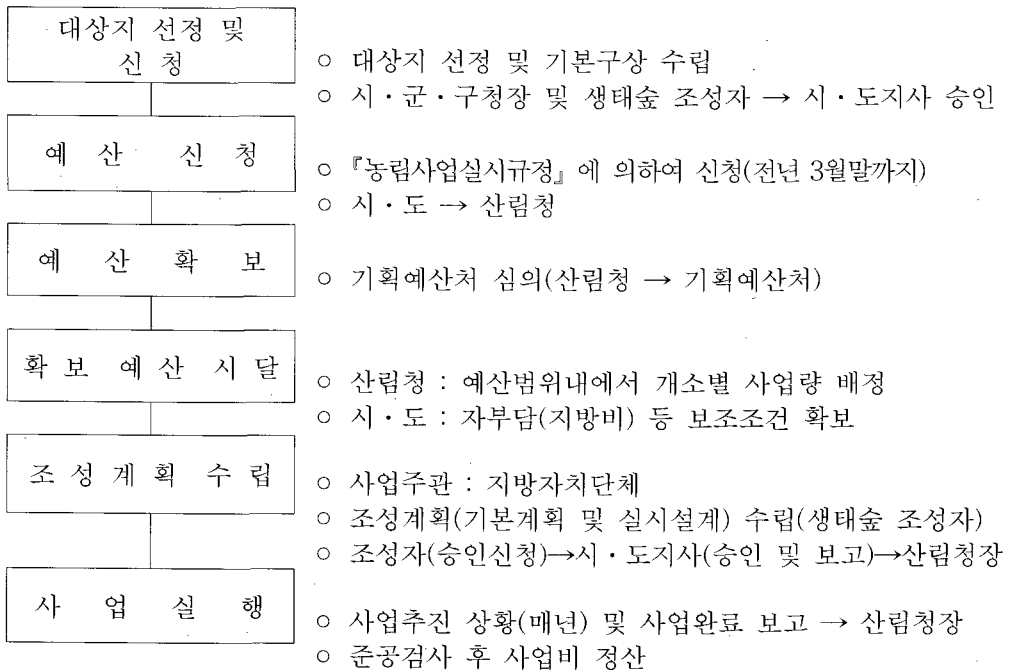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
- 실시설계 수립 및 조성과 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철저

나. 보고·기타

- 국고보조금 정산실적보고(총공통-9)
- 사업추진상황보고(매년 12월 31까지, 시·도지사 → 산림청장)

7.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절차



- 대상지 선정 및 기본구상 수립
- 시·군·구청장 및 생태숲 조성자 → 시·도지사 승인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하여 신청(전년 3월말까지)
- 시·도 → 산림청
- 기획예산처 심의(산림청 → 기획예산처)
- 산림청 : 예산범위내에서 개소별 사업량 배정
- 시·도 : 자부담(지방비) 등 보조조건 확보
- 사업주관 : 지방자치단체
- 조성계획(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생태숲 조성자)
- 조성자(승인신청)→시·도지사(승인 및 보고)→산림청장
- 사업추진 상황(매년) 및 사업완료 보고 → 산림청장
- 준공검사 후 사업비 정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과장 김상균, 임업사무관 이대림)입니다.

## 1. 목 적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산림·산촌을 통합하는 개발방식 유도
- 소득원개발, 정주환경개선, 전통문화계승, 도시와의 교류촉진 등 산촌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산촌진흥 도모
- 타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의 추진
-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임업의 산업화 가능성 제시를 통한 정체성있는 개발

##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 산촌개발사업예산편성및관리요령(산림청예규 제504호)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까지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이후	
사업량	(47)	46 (12)	49 (34)	25 (15)	80	
사업비	계	94,547	24,561	28,960	16,076	109,040
	보조	53,757	16,387	18,827	11,576	72,240
	융자	21,590	1,634	2,333	-	8,000
	지방비	19,200	6,540	7,800	4,500	28,800
자부담	-	-	-	-	-	

( )는 완료마을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자연적·입지적 특성상 주변의 풍부한 산림(또는 휴양)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할 경우 활력 있는 발전 가능
-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 등 생산기반조성과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한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산촌 구현
- 산촌과 산촌주민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게 하는 산림·산지·산촌의 종합개발의 추진

##### (2) 자금지원대상자 : 당해년도 개발대상 산촌마을

##### (3) 지원단가 및 조건

- 마을조성 : 마을당 총사업비 1,200백만원(사업기간 2년)
  - 보 조 : 1,200백만원
  - 보조율 : 국비 70%, 지방비 30%
- 사전설계 : 마을당 54백만원(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설계부대비 포함)

##### (4) 지원시설의 종류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비 배분기준
계			100%
보조금	생활환경개선	○ 마을기반조성시설 - 상·하수도, 마을안길·진입로, 농어촌도로 등 ○ 문화 복지시설 - 마을회관(산림문화회관), 인터넷 등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주민공동휴식시설 등 ○ 환경정화시설 - 오·폐수처리시설, 소하천(배수로) 정비 등 ○ 기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토목공사 등 - 가로수 및 가로등 정비, 절개지 복구, 사방, 제방 등 재해 방지시설 등	40%

구 분	사 업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비 배분기준
	생산기반조성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고품질 고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농로, 임산물 생산단지(재배단지) 등 ○ 산촌산업개발 - 특산임산물 판매장·집하장, 공동저장·판매, 가공·이용시설, 산림욕장, 임업체험시설, 등산로 등 이에 준하는 산촌휴양시설의 설치 및 소득기반조성 사업 등	60%

※ 비고 : 국고 보조금 배분기준은 마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각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나. 2004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마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45	16,076	11,576	11,576	-	4,500	-
마을조성	25	15,000	10,500	10,500	-	4,500	-
사전설계	20	1,076	1,076	1,076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국유림관리국 국유림경영과[(042) 481-4202~4204]
- 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산촌개발 대상 마을

## 라. 사업시행

### (1) 개발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가 직접 수립하거나 대학의 연구소, 농산어촌 개발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계약하여 수립하게 할 수 있다.
- 사업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 사업대상지의 산림 및 휴양, 문화자원, 역사·생활자원 등 조사 철저
  - 사업대상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명확한 개발목표와 중점투자방향 설정
  - 중장기 개발계획 등 기존계획과 관련 상하위 법규를 검토
  - 타부처 및 우리청 소관 예산사업 중 연계사업 유치 계획 검토
  - 공동판매, 가공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설치시 생산량 및 판로확보 등 시장규모와 시설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 확정전 마을주민대표, 설계업체,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심사평가회를 개최하여 개발방향, 계획사업 및 도입되는 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었는지 또는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후 확정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을 확정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도지사는 개발계획 승인후 산림청장에게 보고
  - 도지사는 연관사업의 지원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승인

### (2) 개발계획의 내용

- 목적, 범위, 기간 등의 사업개요
- 대상지 산촌개발의 목표와 중점투자방향
- 사업의 효과
- 부분별 도입시설 계획 및 타당성 조사(사업수지 분석)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계획
- 계획수립 참여자 명단 등

### (3) 개발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개발계획은 도·농어촌 발전계획,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및 다른 부문의 개발계획과 조화되게 수립
- 법적 제약 등으로 시행 불가능한 사업과 활용가능성이 적은 불필요한 시설물 도입 또는 투자가 과도한 대형사업 등으로 인한 과대 사업비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
- 지역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 과다 개발로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가급적 자연친화형 개발방식을 도입
- 주민 개개인의 이기적인 개발수요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 협의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과잉기대 사전방지
- 공동판매, 가공, 이용 시설 등은 유사시설의 분포상태, 수요전망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당성 검토후 계획 수립
- 철저한 현지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
- 개발마을과 주변마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수립
- 주택개량,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타부처소관 연관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해당부처의 단위사업과 같은 지원기준 적용
- 토지매입비(마을공동시설 부지 등)는 국고보조금으로의 집행이 지난하므로 자부담 확보 추진
- 마을소개 홈페이지구축 등 도시와의 교류촉진방안 반영

### (4) 실시설계

- 개발계획을 토대로 시장·군수가 직접 설계하거나 농어촌개발, 산림, 산촌개발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립
  - ※ 산촌개발마을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설계가 되도록 할 것.
- 환경친화적이며 산촌 이미지에 맞는 경관 조성이 가능하도록 소재와 공법을 선택하고 경관의 사전 사후를 비교하여 계획 수립
- 실시설계는 시장·군수가 검수(인수)함으로써 확정
  - 부문별로 관계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사

#### (5) 사업시행

- 개발계획에 의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타부처개발 계획의 검토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승인 등 절차를 행하고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조감도 및 안내표지판 설치
  - 산촌개발사업 조감도를 마을입구 또는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 산촌개발 주요사업의 건축·공작물 등에는 사업의 목적, 기간, 투자 비용, 사업내용, 시공자, 자금지원기관 등이 포함된 사업안내표지판 설치

#### (6)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임명하여 실시하거나 감리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 (7) 사업비 지원방법

- 마을단위로 정액지원을 원칙
  -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은 별도재원(지방비, 자부담 또는 타부처 소관 투융자)을 마련하여 추진
-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도비 또는 시·군비) 30%는 반드시 확보하여 해당사업에 투자
- 예산신청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예산이 신청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예산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기타 행정자치부, 환경부 사업 등도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적극 협조하여 예산신청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대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그 중물
- 사후관리 기간 : 보조금의 교부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사후관리 기준
  - 사후관리 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처분을 제한하여야 하며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가 불가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2항 및 제35조, 시행령제15조)
- ※ 기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촌개발사업예산편성및관리요령(산림청예규 제504호, '03.1.17)』 제17조·제18조 규정에 의함.

### 나. 보 고

- 사업비 정산 보고 : 2005. 1월말까지

### 다. 사업의 우선지원

- 설계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촌개발 설계관련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
- 조성 : 산촌개발 관련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시공기술,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 선정 (부실시공 또는 부도를 미연에 방지)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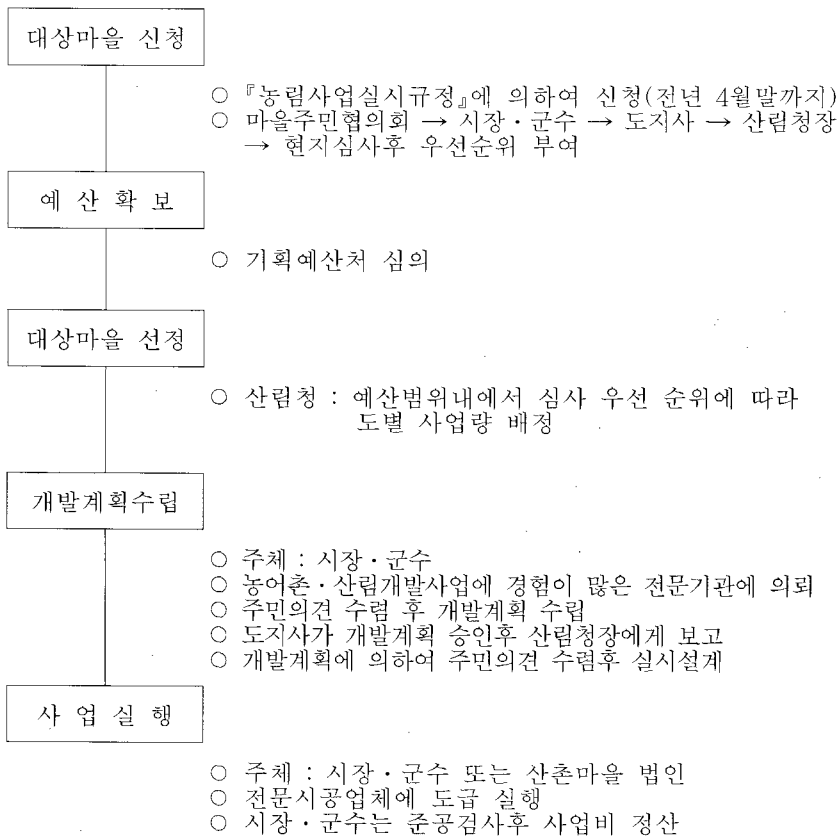
### (1) 선정기준

- 산촌개발사업예산편성및관리요령(산림청예규 제504호, '03.1.17) 부칙 제2항산촌마을중
  - 소득 수준이 낮고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정비가 시급한 산촌마을
  - 주변 산촌마을의 중심지로 기능이 가능한 자연부락중 집단마을
  - 산촌마을 개발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참여도가 높은 지역
- ※ 타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지가가 높아 수년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

## (2) 우선순위

- 뚜렷한 산림소득원(개발가능성)이 있어 임업발전의 잠재력이 크고, 개발후 임업경영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
  - 자연휴양림, 협업체, 영림단 조직과 연계되는 산촌마을
  - 임산물 주산단지 또는 특산임산물이 풍부하여 이용가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산촌마을
  - 청·장년층의 수가 많은 산촌마을
- 연관사업의 투자가 용이하여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고 사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등

## (3) 사업추진 절차





## V. 산림자원 조성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국제협력과(과장 박주린, 행정사무관 김세현)입니다.

## 1. 목 적

- 장기·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로 국내 목재산업 보호·육성
- 해외조림 확대로 장기적 기후변화협약 시행에 대비한 탄소배출권 확보

##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림지 조성
- 해외조림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 투자유망국가와 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임업 투자환경 조사

## 3. 근거법령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및 제11조(사업신고 및 용자지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재정지원)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3~'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년이후
사업량(ha)		39,948	5,529	8,350	7,515	47,650
사 업 비	계	40,666	7,761	9,599	9,539	60,240
	보 조	-	-	-	-	-
	용 자	33,946	7,761	9,599	9,539	60,240
	지방비	-	-	-	-	-
	자부담	6,720	-	-	-	-

※ 2005년 이후 사업량은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의함

※ 사업량은 용자지원 순수조림사업 물량임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 경 : 국내 목재수요의 94%를 외재에 의존하는 해외의존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장기 목재공급원 확보
- 지원대상 : 해외조림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았던 자로서 용자 신청자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비율 : 사업비의 100% 이내
  - 지원내용 : 해외조림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기존 해외조림지에 대한 육림비
  - 용자기간 : 조림목의 수확기간에 따라 결정(아래 표 참조)
  - 해외조림목 반입 : 용자금을 지원 받아 식재한 조림목은 벌채시 전량 국내반입을 원칙으로 함.
  - 용자조건

사업별	금리	용 자 기 간					용자 한도	비고
		구분	용도	계	거치	상환		
해외 조림	연3%	속성수	칩	동남아 10년	7년	3년	제한 없음	
			칩	대양주, 남미13년	10년	3년		
			용재	대양주, 남미 20년	17년	3년		
		장기수	용재	28년	25년	3년		

####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사업량 (ha)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해외조림	7,515	9,539	9,539	-	9,539	-	-
해외육림	12,276	8,311	8,311	-	8,311	-	-
		1,228	1,228	-	1,228	-	-

※ 조림사업은 신규 순수조림, 육림은 기 해외조림지 육림사업임

##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 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국제협력과(042-481-4148)
  - 해외조림 등 해외산림개발실적,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당해년도 사업 계획서 등에 의거 용자지원 금액 결정
- 산림조합중앙회 : 금융부(02-3434-7221~5)
  - 용자금 대출 및 사후관리

다. 자금지원 예정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조림)신고 업체 및 신규 해외조림 참여 예정자

라. 사업시행

- 익년도 해외조림사업 용자지침(안) 작성 : 12월
- 해외조림 시책 설명회 : 12월
- 업체별 용자소요액 검토 : 3~4월
- 용자실행  
업체 용자신청(산림청) → 산림청 용자결정 통보(업체, 산림조합중앙회) →  
업체 구비서류 제출(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용자금 대출(업체)

마.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매년 2~3개소 현지 지도점검 확인
- 조림이 완료된 다음년도에 사업비 소요내역, 공인측량사가 조림면적을 실측한 도면 (또는 위성사진 도면) 등 정산서류를 산림청에 제출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림청  
<연말정산시 제출서류>
  - 공인측량사가 실측한 도면 또는 위성사진, 결산내역서, 대사관 또는 공공기관 조림실적확인서 제출
  - 해외송금(용자금 수령 후 1개월 이내 송금) 의뢰서 사본 제출
- 산림조합중앙회
  - 용자지원 대출금 사후관리

나. 보고·기타

- 사업추진실적 보고(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6조)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청 임업정책국 국제협력과

나. 신청자격

-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았던 자로서 조림대상 국가 공공기관의 당해연도 조림사업계획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자

다.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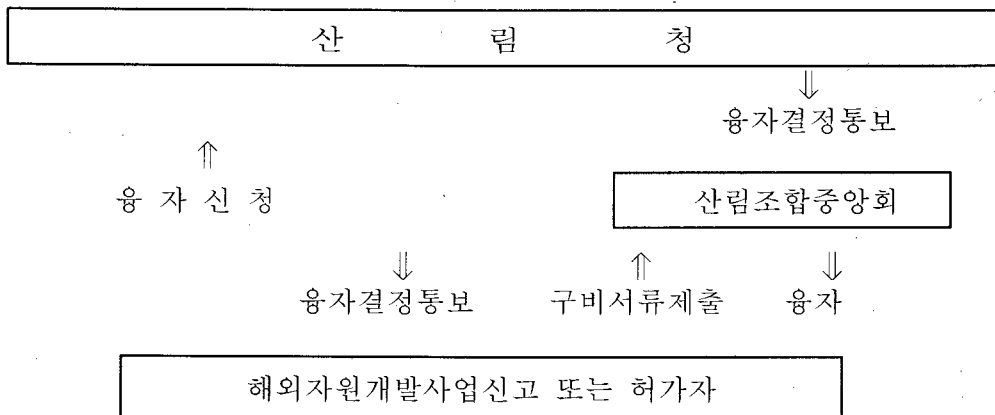
- 선정권자 : 산림청장
- 선정절차 : 해외조림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신청 → 심사 → 용자금결정 → 민원인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통보
- ※ 사업계획 심사 : 조림예정지 정리, 양묘, 식재, 사후관리 등 작업단계별 타당성 및 적정비용 검토

라. 구비서류

- 해외조림사업 용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2004년도 사업계획 확인서 1부(조림대상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 확인)
- 소요자금 산출내역서 1부(산출관련 증빙서류 첨부)
- ※ 서식 : 붙임

마.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를 한 자(허가를 받았던 자 포함)로서 조림대상 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당해연도 사업을 확인 받은 자
- 우선순위 : 없음
- 선정절차



## 해외조림사업 용자신청서

신청자	상호(법인명)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량(ha)				
	사업소재지		국가		단비(\$/ha)			
			지역		조림수종			
	사업비		계		정부지원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천\$					
천원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b>산림청장 귀하</b>								
불입서류 : 1.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1부 (진출국주재 아국 공관이나 진출국의 공공기관 확인) 2. 소요자금 산출내역서(불입1 서식)								

<붙임1>

## 소요자금 산출내역서

### 1. 사업개요

수 종	면 적	본 수	총조립비	사업기간	비 고
	ha	본	US\$		

### 2.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사업별	사 업 비			산 출 내 역	비 고
	현지통화	US\$	원화(천원)		
계					
(1) 예정지정리 -인건비 -장비사용료					장비 사용시 구체적으로 명시
(2) 식 재 -인건비 -기 타					장비 사용시 장비사용료 계상
(3) 조립지관리 -인건비 -기 타					
(4) 자재대 -묘 목 -기 타					
(5) 기타비용 -측량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적용환율 : US\$ = 원

\* 전년대비 증가폭이 큰 비용이나 특수장비사용료, 현지사정에 따른 기타 비용등은 산출내역과 구체적 소요이유를 첨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관련 증빙서류 첨부



## ① 조림·육림·묘목생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자원과(과장 박종호, 임업서기관 심영만, 임업사무관 임상섭, 임업사무관 안범모)입니다.

## 1. 목 적

-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산림의 공익적 편익증대 및 재해 예방 기능 강화
-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 산지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산림자원 조성
- 기능별 산림관리 특성에 맞는 숲가꾸기 실행으로 경제림 촉진 및 공익·재해예방 기반 조성
- 생산임지를 중심으로 지역 또는 권역별로 집중투자 및 기술지도
- 우량한 묘목을 책임 생산하여 조림성과 거양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5조(권한의 위임·위탁, 산림사업의 시행자 등)
- 산림법 제109조(자금지원)
- 산림법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 4. 년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년 이후	
합 계	사업량(ha) (백만본)	1,789,120 (429)	104,220 (20)	154,027 (13)	143,684 (11)	799,294 (62)	
	사 업 비	계	1,338,313	205,367	279,206	258,838	1,671,236
		보 조	539,752	97,090	128,899	136,431	880,955
		용 자	115,103	6,424	5,020	2,301	55,892
		지방비	400,825	74,339	105,404	96,738	631,613
		자부담	282,633	27,514	39,883	20,072	102,776
조 립	사업량(ha)	201,256	14,317	15,127	18,684	85,294	
	사 업 비	계	544,147	82,391	93,128	91,157	655,119
		보 조	294,589	50,120	55,842	57,015	412,026
		용 자	21,327	2,071	1,773	501	7,092
		지방비	160,889	27,712	32,947	31,007	218,417
		자부담	67,342	2,488	2,566	2,634	17,584
육 립	사업량(ha)	1,587,864	89,903	138,900	125,000	714,000	
	사 업 비	계	706,935	117,873	182,022	162,764	927,924
		보 조	245,163	46,480	72,200	81,252	463,590
		용 자	41,437	1,673	1,522	300	1,200
		지방비	239,936	46,480	72,200	65,046	410,377
		자부담	180,399	23,240	36,100	16,166	52,757
묘목 생산	사업량(백만본)	429	20	13	11	62	
	사 업 비	계	87,231	5,103	4,056	4,917	88,193
		보 조	-	490	857	1,460	5,339
		용 자	52,339	2,680	1,725	1,500	47,600
		지방비	-	147	257	685	2,819
		자부담	34,892	1,786	1,217	1,272	32,435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경

- 장기조림계획에 따라 우량건전묘목을 생산하여 경제적·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제림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림관리를 통하여 우량용재 생산 기반조성
- 도시·마을주변, 도로변, 관광지, 주요댐·호수주변,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 대상지 등에 큰나무공익조림으로 쾌적한 생활경관 조성
- 산불 피해지에 대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항구적인 산림복구 추진으로 국토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 5대강유역, 도로변, 병해충, 산사태 및 재해우려지역 등 산림의 기능별 특성에 따른 숲가꾸기 실행 등 적정 관리를 통하여 공익적 효과 극대화 및 재해 예방 기반 조성

##### (2) 지원대상자

- 보조사업 : 조림, 육림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 정부계획 조림용 시설양묘 및 묘목기반조성(관정, 토양개량) 양묘사업자
- 용자사업 : 조림, 육림사업 및 묘목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신청자 (산주,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자)

##### (3) 지원비율

###### ○ 조 립

###### - 정부보조

- 경제수조림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수원함양림가꾸기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큰나무공익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금강소나무림 육성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아름다운마을숲 조성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산불 피해복구조립  
(동해안 지역)  
송이복원조립, 경제수조립, 풀베기사업 : 100%(국비 90%, 지방비 10%)

- (일반 지역)  
경제수조립 : 90%(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경관림조성 :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용 자

- 자력사업 : 소요 사업비의 100%까지 용자
- 보조사업 : 산주 자부담액의 100%까지 용자

○ 육 림

- 정부보조 : 사업비의 90%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용 자

- 자력사업 : 소요사업비의 100%까지 용자
- 보조사업 : 산주 자부담액의 100%까지 용자

○ 묘목생산

- 정부보조

- 시설(비닐하우스)양묘 : 시설비의 60%(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 관정시설 : 시설비의 100%(국비70%, 지방비30%)
- 묘포지 토양개량 : 시설비의 100%(국비70%, 지방비30%)

- 용 자 : 묘목생산비의 60% - 용자한도액 100백만원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보조·용자)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143,684ha 11백만본	258,838	142,028	139,727	2,301	96,738	20,072
조 림	18,684ha	91,157	57,516	57,015	501	31,007	2,634
육 림	125,000ha	162,764	81,552	81,252	300	65,046	16,166
묘목생산	11백만본	4,917	2,960	1,460	1,500	685	1,272

※ 용자사업 : 2004년도 임업정책자금 용자 지침에 의함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조림·육림, 시설양묘,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 : 시·군·구
- 묘 목 생 산 : 시·도(산림조합 : 용자금 취급업무)

###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립 청 : 사유림지원국 산림자원과(042-481-4154, 4158, 4162)
- 시 · 도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시·군·자치구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다. 사업시행

#### <조 립>

- 조림예정지 선정
  - 미립목지(나무가 없는 산림),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 벌채지, 형질이 불량한 임지 등 위주로 선정
  - ※ 맹아·치수발생 등으로 천연갱신이 가능한 임지는 인공조림 대상지에서 제외
- 조림예정지 정리
  - 불량목은 완전정리하되 우량목과 산벚나무, 단풍나무등 경관수종은 존치
  - 제거된 지장물은 조림에 지장이 없도록 종·횡으로 줄을 맞추어 정리
  - 백두대간 등 주요지역의 수종갱신조림의 경우 모두베기를 하지 않고 줄베기나 하층 불량목만 제거 후 수하식재
  - ※ 계곡부, 인가 주변, 도로변, 임도변, 농경지 주변 등의 벌채산물 중 통나무는 최대한 수집·제거하여 수해피해 방지
- 수종선정 : 적지적수, 산주 희망수종, 향토수종, 소득수종 위주로 선정
- 조 립
  - 수하식재, 혼효조림, 맹아갱신 등에 의한 생태적 조림(갱신) 실시
  - 식재본수는 수종, 임지여건, 목적 등에 따라 수급계획량 내에서 조정실행
    - 경 제 수 : 1,100~5,000본/ha
    - 맹아갱신 : 인공식재조림을 하지 않고 활엽수벌채임지 그루터기, 잔존목 등을 정리 맹아발생이 잘되도록 함
    - 큰나무공익조림 : 300본~1,000본/ha

- 금강소나무림 육성 : 천연림보육, 솜아베기, 조림, 비료주기 등 종합관리
- 동해안 산불피해복구 조림지 풀베기사업 : 조림 후 3~5년간 6~8월 사이에 년 1~2회 실행
- 수원함양조림지 관리 : '02~'04년 수원함양조림지에 대하여 풀베기 1회 실행

○ 묘목 수급 : 조림설계(계획)에 따라 수급

○ 식재작업

- 식재열(줄)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식재거리를 유지하여 최대한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실행
- 큰나무공익조림 사업은 여론을 수렴 설계에 의거 추진 (사업비 부족분은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 실행)

#### <육 림>

○ 풀베기 : 조림 후 3~5년간 6~8월 사이에 년 1~2회 실행

※ 풀베기작업시 조림된 묘목이 제거되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어린나무가꾸기 : 조림목의 수관이 맞닿아 임분이 형성된(수고 3~6m) 임지에 실행하되 조림목 및 우량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 피해목 등을 제거

○ 덩굴제거 : 임목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를 2~9월 사이에 약제(근사미, 디카바) 주입 또는 인력 등으로 제거 (인력수급 등을 감안 년중 실시)

○ 천연림 보육

- 용재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활엽수림, 소나무림, 혼효림)에 대하여, 미래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방해목을 제거

· 유령림 보육단계 : 평균수고가 2m 내외 또는 4~8m일 때 실시

· 간벌단계 : 평균수고가 10~12m 정도의 임분에서 1차간벌을 실시하고 이후 2~3회에 걸쳐 실시

○ 간 벌(솜아베기)

- 임목 상호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뻣뻣한 임분에 대하여 미래목(최종수확목)을 선정하고 미래목의 생장에 방해되는 경쟁목, 병해충피해목 등을 제거

- 식재 후 10~20년부터 2~3회에 걸쳐 실시

※ 천연림보육·간벌의 경우 계곡부, 인가주변, 도로변, 임도변, 농경지주변 등의 벌채산물 중 통나무는 최대한 수집·제거하여 수해피해 방지

<묘목생산>

- 산림법 제45조에 의거 등록을 한 종묘생산업자 중 정부 조림계획 조림용으로 필요한 묘목을 도지사로부터 대행 생산하도록 지정받은 수량 책임생산
- 황칠나무, 옷나무, 고로쇠나무, 백합나무 등 소득유망수종 양묘 확대
  - ※ 정부조림정책에 맞는 수종의 종자를 확보한 등록업자 위주로 묘목생산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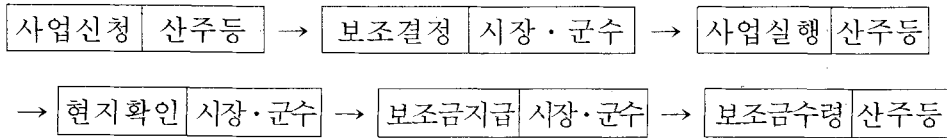
라. 대행 또는 위탁사업의 추진

- 산주가 직접 조림·육림사업 실행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림·육림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산림조합, 법인 등)에게 대행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질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 대행 또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 산림법 제14조 및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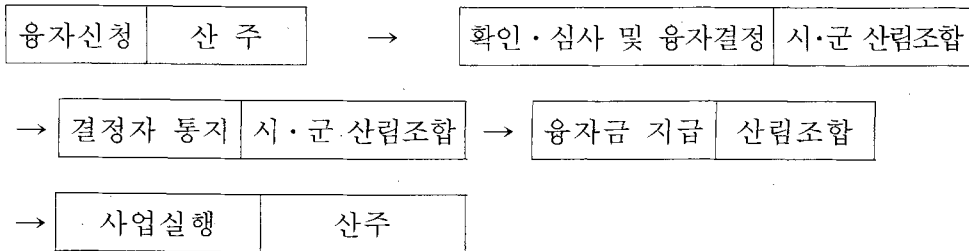
마. 사업비 지원방법

<조림 및 육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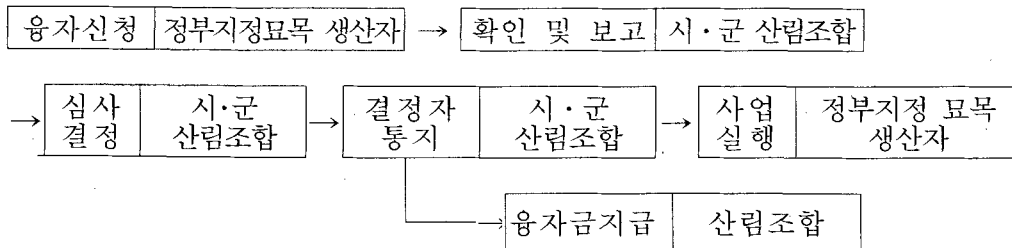
- 보조사업



- 용자사업



<묘목생산 : 용자사업>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주 체

- 조립 및 육림 : 산림소유자, 시·군·구(시·도) 및 산림청
- 묘목생산 : 묘목생산자, 시·군·구(시·도) 및 산림청

#### (2) 사후관리 방법

- 조립목에 대한 활착조사 : 활착상황, 생육상황, 사후관리상황
- 조립 및 육림사업 실행상황을 사후관리 대장에 기록 유지
- 현지도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양묘 포지 육묘관리와 양묘사업상황, 생산실태조사(년2회) 실시
- 시설양묘 및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 현황 기록유지 및 실태조사 실시

### 나. 보고 등 기타

#### <조립 및 육림, 시설양묘, 관정시설 등>

- 조립실적보고 : 춘기조립 완료후(일반통계승인번호 13611)
- 조립·활착상황 보고 : 8. 31 (일반통계승인번호 13612)
- 보조사업 실적 보고 : 회계년도 종료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 <묘목생산>

- 양묘사업 상황 및 실태 조사결과 : 매년 5월말, 10월말까지  
(일반통계승인번호 13609)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조립 및 육림>

- 보조사업 : 시·군·구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융자사업 : 시·군·구 산림조합
- 산림사업 시행자 사업 : 시·군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신청자 : 산림조합)



<묘목생산, 시설양묘,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 보조사업 : 시·군·구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용자사업 : 시·군·구 산림조합

#### 나. 신청자격

<조림 및 육림>

- 보조사업 :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 등 사업실행 주체
- 산림사업 시행자 사업 : 시·군 산림조합
- 용자사업
  - 영림계획상 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자, 자력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

<묘목생산 및 시설양묘, 관정시설 등>

- 시·도지사에게 종묘판매업 등록을 한 자 중 정부지정 묘목생산자

#### 다. 신청절차

<조림 및 육림>

- 보조사업 : 보조사업 희망 산주가 임야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산림사업 시행자 사업 : 시·군 산림조합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용자사업 : 사업 희망자가 시·군 산림조합장에게 신청

<묘목생산>

- 보조사업 : 보조사업 희망 묘목 생산자가 포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용자사업 : 정부지정 묘목생산자가 시·군 산림조합에 신청

#### 라. 구비서류

- 보조사업 :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용자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신청서(별지 2호 서식)

마. 대상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조 립>

○ 산주 또는 경영주체별

- ① 독립가, 임업후계자
- ② 협업체·대리경영 산림경영자
- ③ 기타 산주

※ 경제림단지 등 집단화된 산림에 우선적으로 지원

○ 대상지별

- ① 미입목지
- ② 산불·병해충 등 피해임지
- ③ 수확벌채지
- ④ 복층림 조성을 위하여 벌채된 임지
- ⑤ 생장 상태가 불량하여 가꾸어도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운 임지
- ⑥ 기타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대상사업별로 지방비 확보를 감안한 사업량이 요구되도록 조치하되  
경제림단지내 산림을 우선 선정

<육 립>

○ 산주 또는 경영주체별

- ① 독립가, 임업후계자
- ② 협업체·대리경영 산림경영자
- ③ 기타 산주

※ 경제림단지 등 집단화된 산림에 우선적으로 지원

○ 대상지별

- ① 영림계획상 육림계획이 책정된 임지
- ②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보육 대상지
- ③ 생산임지, 임업진흥권역, 협업경영구역 안의 산림
- ④ 기타 육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국고보조 제외임지>

- ① 국유림
- ② 국유림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 ③ 타용도로 전용할 임지

<묘목생산>

- ① 정부지정 묘목 생산자중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영된 자
- ② 전년도 예산부족 등으로 탈락된 적격자

[별지 제1호서식]

##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 : 조림·육림사업, 시설양묘,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

2. 현 황

사업예정지 현 황	위 치	군. 면. 리. 번지
	소유자명 (묘목생산자명)	
	면 적	필지 ha (m <sup>2</sup> )
	영림계획 편성내용	
기타 특이사항		

3. 세부사업계획

구 분	세부 사업명	계획 면적	조림 수종	단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산림소유자		(ha)							
산림경영자									
단체 또는 회 사									
묘목생산자									

[별지 제2호서식]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용자신청서

사업명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총사업비(천원)				사업소재지
				계	용자	자담	보조	

2004. . . .

○ 신청인 주소  
상호(법인명) 전 화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서류

- 가. 소유권확인서 1부.
- 나. 사업계획서(시설공사에 한함) 1부.
- 다. 기타 필요한 서류

○ ○ 산림조합장 귀하

## ② 보호수 정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보호과(과장 김현수, 행정사무관 원상호)입니다.

### 1. 목 적

-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생육환경 조성
- 보호수의 보존 등에 필요한 시설정비 및 설치

### 2. 추진방향

- 노목·거목·희귀목중 보호수로 지정된 명목(名木)·보목(寶木)·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畸型木) 및 풍치목(風致木)을 대상으로 뿌리, 수간 등 부패부위 등에 대한 외과수술 추진
- 보호수주변 지상의 시멘트구조물 철거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주위 경관과 어울리는 정자, 평상,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마을의 쌈지공원화(쉼터) 추진
- 보호수로 지정된 '전통 숲' 수목의 생육환경 조성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67조,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2004년 (예산안)	2005~ 2007년
사 업 량		200	300	400	600	2,400
- 외과수술(본)		100	150	200	300	1,200
- 주변정비(개소)		100	150	200	300	1,200
사 업 비	계	800	1,200	1,600	2,400	9,600
	- 국고보조	240	360	480	720	2,880
	- 지방비	560	840	1,120	1,680	6,720

※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 5. 2004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 경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관리되고 있는 보호수의 뿌리, 수간 등에 발생한 부패부위 등 생육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보호수의 원활한 생육환경 조성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로운 보호 및 필요시설 정비 및 설치

##### (2) 지원대상 : 시·도, 시·군·구

##### (3) 지원(경상보조)단가

- 외과수술(본당) : 사업비 4,000천원의 1,200천원 지원
- 주변정비(개소당) : 사업비 4,000천원의 1,200천원 지원

##### (4) 지원조건

- 외과수술 : 국고보조 30%, 지방비 70%
- 주변정비 : 국고보조 30%, 지방비 70%

※ <추진체계> 다항(사업시행)과 같이 동일 개소의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인 경우 세부사업간의 사업비는 신축적으로 투자 가능

##### (5) 사업의 세부내용

(가) 외과수술 : 수간의 부패 및 동공 등으로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수에 대하여는 증상에 따라 아래의 부패부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제시되지 않은 사항도 보호수 생육 및 보존에 필요하면 외과수술과 병행 실시 가능

- 부패부위 제거, 살균처리, 살충처리, 방부처리, 방수처리, 인공수피, 수지처리, 고사지·쇠약지 제거, 쇠조임(브레싱), 상토처리 등

(나) 주변정비 : 보호수의 생육 및 주위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수 주변의 시멘트구조물을 최우선적으로 철거, 평상(平床),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을 정비·설치하는 등 썬지공원(썬터)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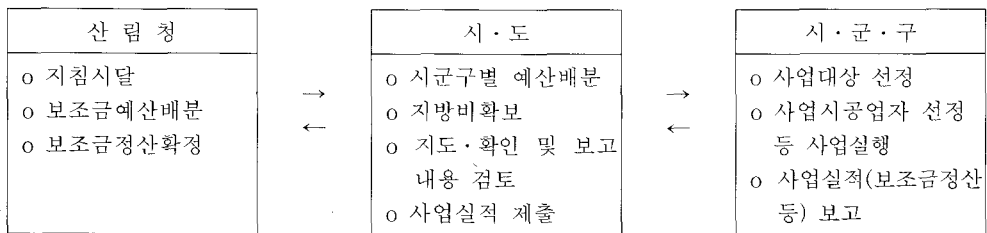
- 시멘트구조물 철거, 정자, 평상, 의자, 운동기구, 자갈부설, 강모래부설, 줄떼심기, 쇠석포장, 자연석쌓기, 안내판, 보호책 등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600	2,400	720	720	-	1,680	-
보호수 외과수술	300 분	1,200	360	360	-	840	-
보호수 주변정비	300개소	1,200	360	360	-	84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사업지도·확인
- 시·군·구청장 : 사업대상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보조금정산보고 등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국유림관리국 산림보호과(042-481-4082~4)
- 시·도 : 산림과, 녹지과등 산림부서
- 시·군·구 : 산림과, 녹지과등 산림부서

다. 사업시행

- 각 시·군·구에서는 시·도에서 배분된 사업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물량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당해 시·도에서는 관내 타 시·군·구에서 확보토록 함.
-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이 동일개소(보호수지정번호 기준)에서 실시되는 경우 세부사업(외과수술, 주변정비)간 1개사업의 사업비중 1/2에 해당하는 2,000천원이하의 사업비를 타 세부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비는 세부사업별 보조금 투자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예) 동일 개소의 경우 총사업비 8,000천원중 외과수술사업으로 6,000천원, 주변정비사업으로 2,000천원 집행 가능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정산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정산실적 등 사업실적을 별지 양식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동 보고서에 대하여 계획 대비 실적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세부사업별(합계, 외과수술, 주변정비)로 재원을 명백히 구분하여 실시함.

마. 기타사항

- 본 지침의 내용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산림청 산림보호과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면 보호수관리대장에 사업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외과수술을 실시한 보호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보호수관리자로 하여금 성실히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시설물(정자, 보호책 등)	준공일	○ 보호수 해제일 까지 ○ 최하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시설설치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부득이 보호수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설은 이축(移築) 등 조치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가. 사업신청 및 사업비 적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수의 생육상태 등을 점검하여 외과수술 또는 주변정비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 한 후 2004년도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사업 신청
- 사업비는 2004년도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적용
  - 외과수술사업과 주변정비사업을 구분하여 신청

### 나. 사업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 외과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보호수를 선정하되 지역의 실정, 주민의 민원 등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보호수를 우선 선정
- 시·도별 사업물량(예산) 배분
  - 시·도별 보호수의 지정본수, 사업의욕, 시·도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배분
- 시·군·구 사업물량(예산) 배분시 우대
  - 사업신청을 한 시·군·구중에서 보호수의 지정본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단체 우대
  - 사업의욕 및 과거 사업수행이 우수한 자치단체 우대

#### (2) 우선순위

- ① 뿌리, 수간부위의 부패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보호수
  - ② 전통 숲 등 숲으로 지정된 보호수
  - ③ 부락 또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수
  - ④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순위에 의하여 선정된 보호수
- ※ 주변정비사업은 보호수주변 지상에 설치한 시멘트구조물 철거 및 보호수로 지정된 '전통 숲'을 최우선적으로 지원

### 다. 기타 사항

-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사업외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즉시 회수하고 산림청에 보고
- 정부시책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군·구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의 보호수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별지]

## 2004년도 보호수정비사업 실적보고서

### 1. 보조금 정산 및 사업실적

(단위 : 본, 개소, 원)

시·군·구	세부사업	보조금 예산액		보조금 교부액(A)		집행액(B)				정산결과 (A-B)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계	보조금	지방비	물량	보조금	
합계	계					( )				( )		
	외과수술					( )				( )		
	주변정비					( )				( )		
	계					( )				( )		
	외과수술					( )				( )		
	주변정비					( )				( )		

※ 집행액(B)의 물량 및 지방비란의 ( )안에는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실시한 실적을 별도기입(전체사업 실적을 파악하고, 익년도 예산작성시 사업비 단가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정산결과(A-B)란의 물량은 보조사업 물량임

### 2. 주변정비사업 세부시설 수량

(단위 : 개소)

시·군·구	구분	안내판	보호책(m)		정자(亭子)	...	...
			생울타리	기타			
합계	계						
	보조사업						
	자체사업						
	계						
	보조사업						
	자체사업						

※ 보호책의 기타에는 구체명 기입(예, 목책, ○○펜스 등)

### ③ 산지목재비축 지원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이용과(과장 최수천, 행정사무관 민한기)입니다.

#### 1. 목 적

- 산림에대한 장기적·계획적인 투자로 산림자원 증대
- 벌기령이 경과한 산림내 입목을 계약에 의하여 비축

####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림자원을 증대시키고 대경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지 않고 산지에 목재를 비축
- 목재비축 계약을 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융자기간 동안은 벌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

#### 3. 근거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 2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이후
사 업 량		3,205천m <sup>3</sup>	30천m <sup>3</sup>	30천m <sup>3</sup>	3,145천m <sup>3</sup>
사업비	계	90,025	831	830	88,364
	보 조 용 자	1,375 88,650	1 830	- 830	1,374 86,990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지원대상 산림

- ha당 입목축적이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 입목축적 이상인 산림으로서 입목의 평균수령이 산림법시행규칙 별표2의 일반기준별기령 이상인 산림으로서
- 산림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휴양림·조수보호구·상수원보호구역·생태계보전지역 및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제한 지역을 제외한 산림

(2) 지원대상자 : 위 (1)항의 조건에 맞는 산림소유자(저당권 등 입목에 관한 권리제한이 있는 산림소유자 제외)

##### (3) 용자조건

- 금리 : 연리 3%
-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계	보조	용자
산지목재비축	30천 m <sup>3</sup>	830	-	83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목재이용과(042-481-4131)
- 산림조합중앙회 : 금융부(02-3434-7221)
- 시·군 산림조합 : 사업담당부서

## 다. 사업시행

###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산림소유자가 산림조합을 통해 용자금 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의 사업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인 후 목재를 비축할 수 있는 산림이라고 판단될 경우 선정

### ○ 사업비 지원방법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과 산림소유자가 산지목재비축 계약 체결(동 규칙 별지 제8호의 2서식의 “산지목재비축계약서” 사용)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여신관련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사후관리

### ○ 용자금액 산정방법

- $\text{m}^3\text{당 목재가격} \times \text{산주예상수익율}(20\%) \times \text{입목축적량}$ 
  - $\text{m}^3\text{당 목재가격}$ 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종별 목재가격의 2등급가격을 적용하되, 조재길이 “1.8m 이상” 가격과 “2.7m이상”의 가격을 평균한 금액을 적용(삼나무, 편백 등 가격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수종은 낙엽송의 가격을 적용)
  - 산주 예상수익율(금액) : 벌채할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산주가 얻는 소득의 평균 비율임.
  - 입목 축적량 : 지원대상 산림을 현지조사(표준지 조사방법 적용 가능)하여 입목축적 산정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지원자 : 목재비축림 안에서는 계약서에서 허용된 행위 이외에는 산림의 형질 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산림조합 : 목재비축림의 관리 상태 등 사후관리

나. 집행실적 제출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용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31일 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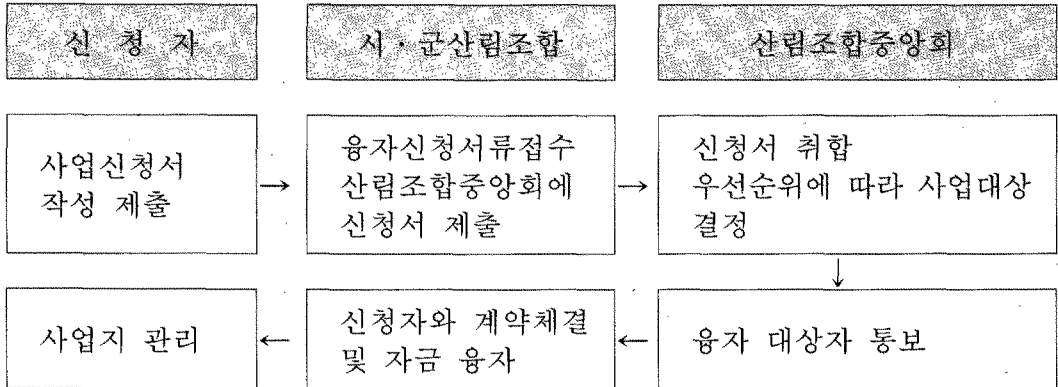
나. 신청자격 : 본 사업시행요령 지원대상자와 같음

다. 신청절차 및 대상자 선정

- 희망자는 산지목재비축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 산림 조합에 제출
- 산림조합에서는 사업신청서, 영림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회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 산림조합에 통보
- 신청자와 산림조합간에 계약체결

라.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별첨) 1부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2) 영림계획을 편성하고 조림·육림 등 산림경영을 위한 투자실적이 우수한 자

(3) (1),(2) 이외의 지원대상자

